

연구총서 12-AB-06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Research on Legislation for Trafficking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여진이 · 최민영

■ 어진이

공익법센터 어필, 호주 변호사

■ 최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인신매매 범죄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검거하여 처벌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수집하기 어려워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은 아직까지 인신매매 처벌을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1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방지, 퇴치, 처벌에 관한 의정서(이하, 인신매매 의정서,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에 우리도 서명을 하였지만, 이행입법 미비로 아직 기준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 의정서 기준을 위해 2011년,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12년, 법무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19대 국회에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8대, 19대 국회에서 연이어 인신매매 처벌,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의의를 지닙니다. 첫째, 인신매매 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을 중심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의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둘째, 인신매매 처벌과 예방,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필리핀, 미국, 호주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법제화에 필요한 시사점들을 논의합니다. 셋째,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 형법개정안, 특별 법안들을 차례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넷째, 앞의 연구들을 기초로 인신매매 처벌과 예방, 피해자보호,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피

해자 보호 법제를 위한 기초적인 제안을 합니다. 본 연구가 앞으로 인신매매 처벌
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
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책임자 최민영 부연구위원과 공익법 센터 ‘어필’
의 어진이 변호사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2년 1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수

CONTENTS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최민영)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인신매매의 개념과 유형(어진이)	15
제1절 인신매매의 개념	17
1.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개념	18
2. 동 개념의 의의	20
3. 동 개념과 관련된 다른 쟁점들	22
4. 유럽평의회 협약상의 개념	23
5. 소결	26
제2절 인신매매의 유형	27
1. 연예홍행 비자(E-6)를 통해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 여성들	27
2.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29
3. 국제결혼을 통해 강제노동 및 성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	31
4. 채무노예로 강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 국내 여성들	32
5. 성관광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아동과 여성들	33
6. 부실한 입양 시스템으로 인해 착취되고 있는 아동들	35
7. 소결	36

제3장 인신매매 관련 해외입법례 검토(어진이)	39
제1절 필리핀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41
1. 필리핀의 인신매매 상황 및 인신매매방지법	41
2. 인신매매 개념정의	42
3. 인신매매행위 범죄화와 처벌	44
4. 피해자 보호 및 인신매매범죄 예방	47
제2절 미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56
1.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	56
2. 인신매매 개념정의 및 처벌	57
3.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63
4. 인신매매범죄 예방	68
5. 국제협력	71
제3절 호주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74
1. 호주의 인신매매 상황 및 호주 연방정부의 대응	74
2. 인신매매 개념정의 및 처벌	76
3. 피해자 보호 및 인신매매 범죄예방 프로그램	85
제4절 소결	89
 제4장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안) 검토(최민영)	 93
제1절 인신매매 처벌규정	95
1. 형법상의 인신매매 관련 처벌규정	98
2. 성매매처벌법상의 인신매매 처벌규정	102
3. 인신매매 처벌의 어려움	104
제2절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규정	109
1. 불법원인채권무효조항(선불금)의 실효성	110
2. 외국인 여성피해자의 보호	111
3.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112
제3절 인신매매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안	113

1. 약취·유인·매매 구성요건의 한계	115
2. 수단행위의 다양성 부족	116
3. 피해자 동의와 인신매매범죄 성립의 무관성	116
4. 미성년자·장애인 피해에 대한 구성요건 완화의 필요성	117
제4절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117
1.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18
2.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122
3. 인신매매 의정서와의 비교	123
 제5장 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법제를 위한 기초제안(최민영) ..	131
제1절 입법형식	133
제2절 인신매매 개념과 인신매매자 처벌	135
1. 인신매매 개념	135
2. 인신매매자 처벌	136
제3절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	137
1. 비범죄화	137
2. 신변보호와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조력	138
3. 체류보장	138
4. 주거·의료 등의 지원	138
제4절 인신매매 예방과 국제협력	139
 참고문헌	141
 Abstract	147

표 차례

〈표 4-1〉 현행법상 인신매매 관련규정	95
〈표 4-2〉 약취·유인죄 판결현황 (2011)	101
〈표 4-3〉 약취·유인죄 관련 기소현황	101
〈표 4-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관련 형사사건 현황 리스트	105
〈표 4-5〉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규정	109
〈표 4-6〉 인신매매 관련 형법개정 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13
〈표 4-7〉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신·구 법률안 비교	120
〈표 4-8〉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신·구 법률안 비교	121
〈표 4-9〉 인신매매 처벌 관련내용 비교	124
〈표 4-10〉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관련내용 비교	126

그림 차례

〈그림 2-1〉 인신매매 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	19
----------------------------------	----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방지, 퇴치, 처벌에 관한 의정서 (이하, 인신매매 의정서 : the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는 다음과 같이 목적, 수단, 행위 중심으로 인신매매를 정의하고 있다. 즉,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위해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개인을 모집,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착취는 성매매,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 및 노예와 유사한 관행, 노역, 장기적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신매매 의정서의 개념정의는 최소 기준의 착취 유형을 제공하기 때문에 각 국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취유형을 포함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를 포함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 보고서는 인신매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경우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첫째, 연예홍행 비자(E-6)를 통해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들. 둘째,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셋째, 국제결혼을 통해 강제노동 및 성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넷째, 채무노예로 강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 국내 여성들. 다섯째, 성관광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아동과 여성들. 여섯째, 부실한 입양 시스템으로 인해 착취되고 있는 아동들.

동 보고서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제화 연구를 위해 비교적 인신매매 관련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는 필리핀, 미국, 호주를 해외입법례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세 국가 모두 인신매매 관련법 이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세 국가 모두 인신매매 관련법들은 인신매매 범죄의 행위, 수단, 목적에 있어서 인신매매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는 인신매매 의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관광의 경우에는 인신매매와 연관된 범죄로 법적 책임을 확대하여 이와 연루된 자들도 모두 처벌하고 있다. 곧, 인신매매자는 아니지만 착취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한 자와 이를 조장 또는 계획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국가 모두 피해자를 비범죄화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의 종착국인 호주와 미국의 경우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법제에서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규정들로는 형법상의 약취·유인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처벌규정,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규정 등이 있다. 하지만, 동 규정들은 모두 현실에서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측면에서 각각의 한계와 어려움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인신매매 처벌규정을 형법각칙의 장에 새로이 넣어 개정하려는 형법개정안이 2012년 8월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었고,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2010년 7월, 2011년 3월, 2012년 7월에 발의되었다. 동 보고서는 이 개정안과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피고, 앞서의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규정들과 비교하여 동 법안들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이를 기초로, 입법형식, 인신매매 개념과 처벌,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제를 위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동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서론

최 민 영

제1절 연구의 목적

전 세계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2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방지, 퇴치, 처벌에 관한 의정서(이하, 인신매매 의정서,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에 한국은 2001년 서명을 하였으나 이행입법 미비로 아직 비준을 못한 상태에 있다. 동 의정서 비준을 위해 2011년 7월에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고, 법무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2012년 8월 13일 19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형법 개정안은 기존의 약취, 유인죄를 보완하고 인신매매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위 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행입법이 되려면 단순히 인신매매 범죄자 처벌을 위한 규정만 신설되어서는 안 되고, 더 포괄적인 인신매매 정의 규정과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신매매 유형들 모두 담아내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법제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신매매 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을 중심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의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둘째, 인신매매 처벌과 예방, 피해자 보호의 측

면에서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필리핀, 미국, 호주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법제화에 필요한 시사점들을 논의한다. 셋째,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 형법개정안, 특별 법안들을 차례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다. 넷째, 앞의 연구들을 기초로 인신매매 처벌과 예방, 피해자보호,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법제를 위한 기초적인 제안을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우선, 인신매매 개념은 인신매매 의정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여러 시민단체들의 자료와 방문면담 결과를 기초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의 유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필리핀, 미국, 호주의 인신매매 관련법을 인신매매 개념정의, 처벌, 예방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신매매 관련 처벌규정과 인신매매피해자 보호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이어서, 인신매매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안과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이후, 앞의 인신매매 의정서와 비교하여 각각의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앞의 연구들을 기초로 인신매매 개념과 처벌,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인신매매 예방과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법제를 위한 기초적인 제안을 한다.

위의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신매매 현황과 현재의 인신매매 관련법제의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활동가들의 자문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2장

인신매매의 개념과 유형

어진이

인신매매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인신매매의 개념

본 연구는 인신매매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제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의 개념정의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법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¹⁾ 현재 국내 형법과 특별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직접 다루고 있는 규정이 거의 전무한 편이다. 따라서 국내 법규를 통하여 인신매매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아래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방지, 퇴치, 처벌에 관한 의정서 (이하, 인신매매 의정서 : the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중심으로 인신매매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²⁾

1) 인신매매는 사법적 관점(범죄행위의 관점), 인권적 관점(기본권의 침해의 관점), 정치적 관점(합당치 못한 세계화와 이민정책의 부수현상의 관점) 또는 사회적 관점(피해자의 보호의 관점)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정의는 지역, 국가, 인터넷, 유로폴, 국제기구에 따라, 조약, 법률 등과 같은 법적 문서에 따라, 범죄근절 혹은 인권보호 등과 같은 목적에 따라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준오/이윤미/한종만/김종훈/배규성/김봉석, 국제인신매매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한국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53면 이하.

2) 2000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al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 Treaty Series, Vol. 2237, 319면 참조. 인신매매 의정서는 2000년에 제정된 ‘국제조직 범죄에 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부

1.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개념

인신매매 의정서는 2000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03년 12월 25일 발효되었다. 2012년 6월 현재, 153개의 회원국 중 117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다. 동 의정서상의 인신매매 개념은 기존에 있던 노예, 성매매, 강제노동, 인권,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협약들의 영향을 받고 발전된 것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처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졌다.³⁾

인신매매 의정서에 의하면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위해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개인을 모집,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착취는 성매매, 기타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 및 노예와 유사한 관행, 노역, 장기적출 등을 포함한다” (동 의정서 제3조 a).

속 의정서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인신매매, 이주자의 밀입국, 무기밀매에 관한 3개의 의정서를 두고 있다.

- 3) C. Morcom & A. Schloenhardt, The Evolu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Queensland, 2011, 5면. 동 의정서 제정에 영향을 준 협약들은 다음과 같다. 1)노예 관련 협약 : 1904 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I, 1910, 83면.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VIII, 278면. 2) 성매매 관련 협약 :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IX, 1933, 415면. 1947 Protocol to amend the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and the 1933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of Full Age, Treaty Series, Vol. 53, No. 770. 1950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UN Treaty Series, Vol. 96, No. 1342. 1979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 Treaty Series, Vol. 1249, No. 20378. 3) 강제노동 관련 협약 : 1930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f Compulsory Labour, ILO Convention No. 29. 1957 Convention Concerning Abolition of Forced Labour, ILO convention No. 105. 1999 Convention to Eliminate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ILO convention No. 182. 4)인권 관련 협약 :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 A (III). 현대 국제인권법의 초석으로 여겨지고 있는 세계인권선언문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5)아동 권리 관련 협약 : 1989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Treaty Series, Vol. 1577, No. 27531.



그림 2-1 인신매매 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

의정서의 정의에 따르면, 유엔의 현대판 노예제도 착취유형에는 강제노동(forced labour), 성매매의 성착취(exploitation of prostitution of others),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강제결혼(forced marriage), 채무노예(debt bondage), 이주노동자 착취(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아동매매(sale of children), 아동 성매매(child prostitution), 아동 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 아동노동(child labour), 성관광(sex tourism), 무력 활동을 위한 아동의 이용(use of children in armed forces), 불법입양(illegal adoption), 장기매매(trafficking in human organs)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신매매 의정서가 “최소 기준의” 착취 유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는 국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취유형을 포함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를 범죄화하기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⁵⁾

4) Combating Trafficking in Person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o. 16, UNODC, 2009, 18면.

5)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제5조.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인신매매 법률에는 장기적출, 강제노동, 성매매 목적 이외에 아이를 낳아 데려갈 목적으로(giving birth to a child and taking the child away) 또는 외설적 출판물, 성범죄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구걸행위, 생체실험의 목적이, 필리핀에서는 아동을 무력 활동에 가담시킬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성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을 위한 입양, 외국인에게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로 정의하고 있다.⁶⁾

2. 동 개념의 의의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인신매매 의정서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뿐만 아니라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우리가 주로 인지하고 있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만큼이나 비중이 크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하지만, 인신매매에 대한 대부분의 통계들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만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⁷⁾ 한국 역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들이 있다. 하지만,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재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 개념은 어업 이주노동이나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강제노동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인신매매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줄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강제노동협약 제29조 제2항의 강제노동에 대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강제노동에 대한 6가지 지표를 만들어 강제노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⁸⁾

6) 덧붙여서, 2002년 유럽평의회 결정(2002/629/JHA)을 대체하는 인신매매 예방 및 대처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지침(European Union Directive) 2011/36 제11조의 ‘범죄 행위의 착취(exploitation of criminal activities)’ 구걸, 소매치기,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 마약 판매 행위와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게하는 유형의 착취를 의미한다.

7) 성착취는 이제까지 인신매매(79%)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강제노동(18%)이 이를 뒤따른다. 이는 아마도 통계적 편향의 결과일 것이다. 성착취가 더욱 자주 보고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중에서 가장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반면에 강제노동, 부채탕감을 위한 노동, 가정 내에서 노예상태, 강제결혼, 장기적출, 아동 착취(구걸), 매춘, 전쟁 등과 같은 인신매매의 다른 유형은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UNODC,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009, 1면.

둘째, 인신매매 의정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이 기존처럼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개념이 아니라,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수송 또는 제공받는 행위’로 새롭게 정의되었다는 것이다. 즉, 동 의정서에 따르면 꼭 노예를 소유하거나 개인을 물리적 지배 아래 두지 않고, 상대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위압을 주는 것만으로도 인신매매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수단과 관련하여 상대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기 않은 체류자격 및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다든지, 이주자로서 언어를 모르는 것 등을 모두 취약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2001년 필리핀에서 온 3명의 여성을 속여 이들의 취약한 체류자격 및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남성에게 “취약한 피해자 증진원칙(vulnerable victim enhancement doctrine)”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⁹⁾ 이처럼 상대의 취약성을 이용한다는 표지가 인신매매 개념으로 도입되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사건들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립을 위해서는 심각한 정도의 물리력이 요건으로 요구되어 범죄자를 기소하는

8) 강제노동협약(Forced Labor Convention) 제2조, 제1항에서는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r)”이라는 용어를 처벌 등의 위협 하에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며, 자발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일이나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한 강제노동에 대한 6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협박, 비난, 폭언, 폭행에 대한 협박 등의 감정적 고문을 포함하는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2. 행동을 제한, 그리고/또는 업무현장에 감금하는 것, 3. 부채상환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는 것, 4.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거부하는 것, 5. 여권과 신분 증명서를 보유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떠날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의 신분이나 신분을 밝힐 수 없도록 하는 것, 6. 정부기관(authorities)에 적발된다고 협박하는 것 이에 대해서는 Combating Trafficking in Person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o. 16, UNODC, 2009, 20면 이하.

9) United States v. Castaneda(2001)사건에서 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섬에 있는 Mood and Music Night Club의 공동소유자인 항소인은 필리핀으로부터 서빙(waiting tables) 및 노래를 위해서 세 명의 어린 소녀를 채용했다. 채용시에 항소인은 소녀들의 역할은 “클럽 입구에서 손님들에게 키스 등으로 인사하는 것, 손님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어쩌면 손을 잡는 것”등 이라고 하였다. 항소인은 “personnel rules and policies”라고 명명된 소책자에 서명했는데, 이 책자는 직원들이 성매매에 연루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채용이 이루어지고 나자, 소녀들은 남성 고객들에게 선택 받은 후에, 사적인 공간(private room)에서 성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요당했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소녀 한명이 FBI에 고소를 제기했으며, 그 고소로 인해 항소인은 체포가 되었고, 결국 12개월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법원의 silverman판사는 “취약한 피해자 증진원칙(vulnerable victim enhancement doctrine)”을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정당한 직업에 대한 약속에 기만 당하여 자신의 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온 것이다” 이 기만의 결과로, 피해자는 외국에서 발이 묶인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가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로 고용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곳에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동 개념이 도입되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3. 동 개념과 관련된 다른 쟁점들

이 밖에 인신매매 의정서는 위의 인신매매 개념과 관련하여 다른 중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동 의정서는 입법을 통해 인신매매 자체를 범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신매매 의정서 제5조는 “각 당사국은 의정서 제3조에 규정된 행위가 의도적으로 행해진 경우, 자국의 국내법상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

둘째, 인신매매 의정서 제3조 b)에서는 착취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중요치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의 여부를 의정서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 인권 단체들 사이에서도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단체들이 성매매가 개별적인 여성의 선택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와는 관계가 없는 해악적인 것이라 주장하여 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자발적 성매매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¹¹⁾

셋째, 인신매매 의정서 제3조 c)에서는 아동의 경우,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은닉 등의 행위는 의정서에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

10) OHCHR이 권고한 인권과 인신매매에 대한 가이드라인 (4) (Guideline 4: Ensuring an adequate legal frame, OHCHR 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에서도 구체적인 적절한 인신매매법이 없는 것은 인신매매 방지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각 당사국이 인신매매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은 시급하고, 이것은 인신매매 방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1) 인신매매 의정서 입법제정 이전에 논쟁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여성들의 자발적 성매매의 가능성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 여성의 자발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단체들은 의정서에 기재된 인신매매의 정의에서 자발성이 완전히 무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신매매의 정의를 좁히려 했다. 이에 반해, 자발적 성매매의 가능성에 반대하는 단체와 프랑스, 스웨덴, 미국 정부는 “자발적 성매매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준오/이윤미/한종만/김종훈/배규성/김봉석, 앞의 문헌, 58면 이하; Janice G. Raymond, The New UN Trafficking Protocol,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No.5, 2002, 493-494면.

신매매 범죄로 간주된다고 본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는데, 의정서는 이 규정을 통해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한다.

넷째, 인신매매 의정서 제6조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제6조는 피해자가 안전할 권리, 사생활과 신원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지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법적 권리 및 소송절차 등에 대해 알 권리 등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인신매매 피해자를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

다섯째, 인신매매 의정서 제7조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자국의 영역 내에 체류하도록 허가하는 입법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체류자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동 조항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체류자격 문제에서 참조할 중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인신매매 의정서 제9조는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협력 방식을 포함한 입법 또는 기타 교육, 사회 문화적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서 인신매매를 예방할 것을 강조하였다.

4. 유럽평의회 협약상의 개념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지역적인 협정들도 있는데,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2005년 유럽연합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채택한 유럽평의회 협약(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of 2005)이다.¹²⁾ 이 협약은 피해자의 인권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

12) 동 협약은 유엔의 인신매매 의정서에 규정된 인신매매의 국제적 정의를 수용하였다. 동 협약은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Der EU-Rahmenbeschluss zum Menschenhandel von 2002, Russlandanalysen, Nr. 52, Jan. 21, 2005, 14면):

인신매매의 형법적 구성요건은 노동력 착취 목적이나 혹은 성적 착취 목적이다.

(1) 모든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한 인간에 대한 모집, 운송, 이송, 숙박제공, 인수하는 행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이루어질 경우 형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폭력사용이나 폭력적 위협 혹은 납치를 포함해서 기타 여러 형태의 공갈협박

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동 협약은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인신매매 의정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인신매매 의정서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에 비해, 유럽평의회 협약 제10조는 당사국들에게 인신매매피해자의 식별절차에 대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가 미등록 이주자로 간주되어 제대로 식별되지 않은 채 즉시 추방되거나 구금시설에 보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과 보호는 기타의 다른 취약한 그룹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식별이 중요하다.¹³⁾

또한 인신매매 의정서는 인신매매피해자가 인신매매범죄와 관련하여 여권위조, 불법입국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언급이 없다. 반면, 동 협약 제26조에는 인신매매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피해자를 범죄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보호와 관련해서도 동 협약은 아동의 체류자격과 아동이 증인인 경우에 관해 더 자세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¹⁴⁾

b) 교활한 속임수나 혹은 사기

c) 권력 지위의 악용이나 혹은 취약한 자라는 지위 이용(해당 인간이 실제 타당한 다른 가능성이 없는 상황)

d) 노동과 서비스를 통해 인간의 착취 목적(강압적으로 행해지는 노동 혹은 서비스, 노예신분 혹은 노예관계, 성매매를 통해 한 인간의 착취 목적, 혹은 포르노와 외설작품을 포함한 성적 착취의 기타 형태로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되는 피해자(동의를 상관없음)에게 금전적 지불 혹은 특혜의 보장이나 재공)

(2) (1)항에 언급된 전제조건들 중 하나라도 행해진 경우라면 의도적이나 혹은 사실상 존재하는 착취의 인간거래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다.

(3) (1)항에 언급된 범법행위에서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1)항에서 언급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범법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4)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13)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방지교육 지침서, 피해자 식별 및 인터뷰 기술, 2011, 16면.

14) 아동이 증인인 경우(동 협약 제28조)나 아동이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이 협약은 제14조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나. 법인과 기업의 법적 책임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유럽평의회 협약 제22조에는 법인(legal person)이나 기업(corporate person)에게도 인신매매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성관광을 기획한 여행사, 노동 및 성착취를 위해 외국인을 알선한 고용업체,¹⁵⁾ 강제입양을 한 입양기관, 강제노동에 연루된 기업, 그 밖에 광고업체, 결혼중개업소도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다. 서비스 사용자의 처벌

유럽평의회 협약 제19조는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인신매매 피해자인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사용한 자도 처벌받도록 하였다. 이것은 성구매자가 성매매방지법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서도 인신매매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인신매매 범죄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수요차단의 방안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성을 구매한 자도 인신매매방지법으로 처벌하고 있다.¹⁶⁾ 또한, 미국에서는 강제노동과 관련된 서비스나 노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것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미필적 고의로 방치한 행위 또한 처벌받도록 하였다.¹⁷⁾ 그 밖에도 동 협약은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국가조사 보고관(National Rapporteurs)를 두도록 하고 있다.¹⁸⁾

15) ILO 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1997, 제7조.

16)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제11조는 성매매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사람으로부터 성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7) TVPRA of 2008, sec1589 (b).

18) 이 협약 제36조에서는 10-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a group of experts)”을 설치하여, 이들이 중요한 일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동 협약 제37조는 유럽협회의 사무총장이 소집하여 “당(party)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각의 당은 국가기관과 입법 요건 등을 통하여 국가의 반(anti)-인신매매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국가 조사보고관(National Rapporteurs)이나 다른 메커니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제29조 제4단락).”

라. 기타 쟁점들

이외에도 유엔의 인신매매 의정서에는 인신매매의 범죄화 규정은 있지만, 이에 따른 처벌과 관련해서 형량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¹⁹⁾ 그리고 의정서에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제6조가 모두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비판을 받는다.²⁰⁾ 이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많았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량조항으로 두었다는 의견도 있다.²¹⁾

5. 소결

이와 같이 유엔의 인신매매 의정서는 유럽평의회 협약과 비교할 때에는 누락된 쟁점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의정서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범죄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신매매의 범죄유형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더 나아가, 인신매매 의정서는 각 국가들이 이러한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한 법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국제기준으로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²²⁾

19) 이 협약의 제23조는 “효율적이고, 적절하며, 중단을 설득하는(dissuasive)” 제재가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협약의 제24조에서는 공무원이 인신매매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또는 아동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와 같이 가중처벌 사유(aggravated circumstance)를 두었다.

20) 예를 들어, “shall consider, to the extent possible, consider implementing etc.”과 같은 구속력이 없는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Kelly E. Hyland, *The Impact of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Human Rights Brief 8, No.2, 2001, 31면.

21) Kelly E. Hyland, 앞의 논문, 31면.

22) M. Mohamed Y. Mattar, *International Conventional Law: The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peech delivered on October 25, 2002 at the Globalization, Justice and the Trafficking of Woman and Children Conferenc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USA, 4면.
<http://www.protectionproject.org/wp-content/uploads/2010/09/International-Conventional-Law.pdf>

제2절 인신매매의 유형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 기준과 비교하여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범죄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소위 “봉고차 납치”와 같은 명확한 인신매매 범죄 이외에도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통로와 그 대표적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한다.

1. 연예홍행 비자(E-6)를 통해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 여성들

수많은 이주여성들이 한국 성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다. 성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연예홍행 비자(E-6)를 받고 기지촌이나 항구주변 미군이나 외국인 노동자, 기술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시설로 유입되고 있다. 부산 초량 지역에는 총 30여 개의 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여기에는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여성 40여명, 필리핀 여성이 1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E-6 비자뿐만 아니라 결혼 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하기도 한다. 군산 아메리카 타운 지역은 17-19개의 업소가 있고, 현재 약 70여 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일하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는 100여 개의 업소들이 있고, 여기서는 총 1,000여 명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특히 대부분의 여성들이 필리핀에서 오고 있는데 모집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필리핀 현지 해외고용알선업체가 한국주재 필리핀대사관 내 해외노동사무소(POLO)로부터 검증된 한국 파견업체(소위 ‘기획사’)에서 인력을 요청받아 ‘연예인’을 발탁한다.²⁴⁾ 다음에는 해외노동사무소(POLO)에 외국 고용주(한국 파견업체)

23)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과 실태, 여성과 인권 제3호,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두레방 등 3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편집팀, 2010, 12면 이하.

24) 한국-필리핀 간 성산업 이주(E-6-2사증관련) 송출실태 보고서,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요타재단 협력프로젝트, 5면.

및 송출 연예인을 등록하고, 해외이주고용노동청(POEA)에서 발급되는 등록된 연예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해외고용 증서(OEC : 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를 출국심사 때 제출한다. 다음으로 한국 파견업체는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Korea Media Rating Board)의 추천절차를 진행하고, 추천서류를 통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발급 인정서 번호를 받게 된다. 그 후, 주필리핀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여 통과하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²⁵⁾ 문제는 필리핀 해외이주고용노동청(POEA)에 등록된 외국인 연예인 수보다 한국 출입국 외국인 숫자가 2배 이상 된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 정부가 이 절차를 통과하지 않은 한국인 파견업체라고 할지라도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발급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⁶⁾

이렇게 사증을 받은 여성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업주에게 인계되고 노래하는 연예인이 아닌 접대부로 일하게 된다.²⁷⁾ 여성들은 업소를 벗어나고 싶어도 외출에 제한이 있고, 탈출 시에는 벌금이 있으며, 입국하면서부터 빚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한 업주들의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업주와 브로커로부터 탈출하더라도 불법체류자가 되어 잡혀갈 것이라고 알고 있고, 한국 경찰이나 단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탈출이 어렵다고 한다.²⁸⁾

25) 박수미,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E-6비자의 개선방안,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자여성 지원시설, 여성과 인권 제4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0, 25면.

26) 박수미, 앞의 문헌, 31면 이하; 박수미,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자여성 지원시설, 2012년 8월 방문 면담 결과.

27) 이런 접대부를 주스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일주일에 주스 70-80잔, 한 달에 300-400잔 정도의 주스 쿼터를 채워야 한다. 이들이 파는 주스는 한잔에 1만원으로, 이중 2천원이 여성의 몫이 되어 한 달 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신고 된다. 하지만 이 중 20만 원 정도가 필리핀 현지 기획사로, 다음 20만 원은 국내 '기획사'로 지급되고 남은 돈을 이들이 받게 된다. 이 여성들은 쿼터를 채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파인(bar fine)이라는 것을 나가게 된다. 이것은 곧 성매매를 뜻한다. 바파인은 손님이 종업원을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업주에게 내는 일종의 벌금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시함께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공동집필, 2010, 13면 이하.

28) 박수미,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자여성 지원시설, 2012년 8월 방문 면담 결과.

2.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가. 어업비자(E-10)를 통한 이주노동자

작년 뉴질랜드 해상의 한국 원양어선 오양 75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비인간적인 의식주, 폭행과 폭언,²⁹⁾ 성추행,³⁰⁾ 임금착취 등 온갖 종류의 인권침해에 시달린 것이 알려져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³¹⁾ 오양 75호 사건과 연근해의 외국인 선원의 인권실태는 어선에서의 감금, 폭행 등의 가혹행위와 열악한 근로 조건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강제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임금차별과 근로 조건의 차별 때문에 외국인 선원들은 어선을 이탈하고자 한다. 하지만 선주, 송입업체, 송출업체는 고용계약이 끝나면 주겠다고 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여권을 압수하거나, 고액의 관리비를 받거나, 이탈 보증금(약 500~1000만원)을 받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들은 고액의 이탈보증금과 관리비를 내고 왔기 때문에 강제노동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³²⁾

29) 폭행의 구체적 사례 : (선원 T) 2010년 12월경, 선원 T가 로프를 빨리 만들지 못하는 것을 보고 L은 로프로 등과 허벅지를 때렸고, 한번은 마대 물을 치우지 않았다고 마대자루로 등을 맞기도 하였다. 그물 손질을 하는 중에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슴과 다리를 향해 그물 비늘을 던지는 일이 있었고, 한 번은 소지하고 있는 칼을 T에게도 던졌으나 다행히 피해서 맞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오양 75호의 끝나지 않은 악몽, 공익법 센터 어필 보고서, 2011, 5면. <http://www.apil.or.kr/1108> 참조.

30) (선원 S) 2011년 4월과 6월 사이의 아침 11,12시 경에는 잡은 생선을 그물에서 꺼내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 M이 뒤에서 다가와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접근시켰다. 이러한 일이 10번 이상 벌어졌다. 앞의 보고서, 6면.

31) 경향신문 2012.06.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42148345&code=940202 참조; 2011년 6월 20일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국적선 오양 75호에서 일어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32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탈출한 사건은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닐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뉴질랜드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어 선상에서의 학대,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소송까지 제기되었으나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있다. 앞의 보고서, 1면.

32) 오양 75호에 탑승하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3개의 인력회사 - 누린도 만diri 인터네셔널 (Nurindo Mandiri International), 판차카르사 만diri 세자티 (Pancakarsa Mandiri Sejati), 오리자 사티바 (Oryza Sativa) - 를 통해 모집이 되었다. 인력회사는 모두 한국의 인력회사 (송입업체)와 계약을 맺고 선원을 모집하는 송출업체이다. 인력회사마다 계약조건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가의 담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땅 문서, 자동차 문서, 학위증 등 선원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제

이렇게 송출업체에서 이탈보증금을 받는 것이 노동력 착취로 이어지고 있지만, 송출업체는 대한민국의 관할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선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선원법이 적용되어 근로조건이나 임금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게 된다.³³⁾ 나아가서,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선원법에서 시간 외 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한층 더 취약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외에도, 선원법에서는 한국인 선원의 경우에만 국토해양부 장관의 고시로 정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E-10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 단체와 선원 노동자단체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최저임금은 2009년에는 80만원, 2010년에는 85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³⁴⁾ 또한, 한국인 선원들은 고정 급여 이외에 성과급을 받는 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들의 급여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한국인 선원들의 몫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외국 선원들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에 관해 선주와 협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³⁵⁾

나. 고용허가비자(E-9)를 통한 이주노동자

2012년 미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온 저숙련 단순노동직(영세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연근해 어업 등)에 종사하는 이주자들은 채무노예로 전락되거나 임금체불, 계약위반, 여권압수, 강제노동 등에 시달리는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³⁶⁾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공해야 하며, 인력회사에서는 선원들이 업무를 완전히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에만 담보를 되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인력회사에서는 담보와 함께 고액의 취업 수수료 (placement fee)를 요구하며, 이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취업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담보에 대하여 인력회사에 확인한 결과, 담보를 요구하는 시스템은 한국 시스템이며 한국 측에서 이러한 담보를 받을 것을 요구로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오양 75호의 끝까지 않은 악몽, 공익법 센터 어필 보고서, 2011, 4면. <http://www.apil.or.kr/1108> 참조.

33) 20톤 미만의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은 E-9비자를 통해 노동허가제 규율을 받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은 E-10비자를 통해 외국인선원제 규율을 받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선원법만 적용이 된다.

34)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2012.6.29, 67면.

35) 덧붙여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오양 75호 사건의 경우 선원들은 보통 하루에 19~22시간 일을 하고,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24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보고서, 67면 이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노동력 착취, 강제노동, 계약과는 다른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임금, 임금 체불, 폭행, 성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마음대로 일자리를 옮길 수 없게 하고 있다.³⁷⁾ 결국, 이들은 사업장 변경신청 또는 재계약이 모두 고용주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된다. 한 예로, 필리핀에서 온 한 남성은 한국에 입국해 2 번의 직장 이동 후 일하다가 상습 임금체불로 다시 직장이동을 선택했다. 하지만 2 개월의 구직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직장으로 돌아갔으나, 또 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 남성은 불법체류 신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했다.³⁸⁾ 이런 구조 속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비자발적인 강제노동의 표적이 되기 쉽다.

3. 국제결혼을 통해 강제노동 및 성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

결혼이라는 표면적 목적 하에 살림은 물론, 병든 부모님 수발에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한 경우, 결혼이주여성에게 계속해서 폭력적이고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출산 이후 아이를 빼앗아 간 후 이주여성을 쫓아낸 경우, 그리고 국제결혼으로 여성을 유인하여 마사지 업소나 성매매 업소로 팔아 넘기는 경우 등 자발적인 결혼이라는 이미지 뒤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여러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다. 대표적인 성착취·노동착취 목적의 국제결혼은 다음의 사례와 같다.

사례 1. 베트남 여성 O씨는 2009년 2월 현지에서부터 일주일 내내 성관계를 요구 받아 당황했으나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입국했다. 하지만 한국 배우자는 변태적이고 폭력적인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하였고, 힘들다고 호소를 해도 화를

36)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2, US Department of State, 210면.

37)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이주노동자들이 4년 10개월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3년간 3회, 재고용의 경우 2년간 2회 이상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었고 사업주의 고용허가 취소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동하게 될 경우에도 사업장 이동 횟수에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관련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참조.

38)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절망과 한숨을 들어라!,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피해사례.
http://withmigrants.org/xe/data_04/64683

내었고, 결혼중개업체 사장도 거부하지 말라고 하여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다가 20여일 만에 집을 나오고 쉼터로 입소하였다 (성착취 목적의 국제결혼).³⁹⁾

사례 2. O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하룻밤을 지내고 마사지 업소로 넘겨졌다. 그 후에 남편과 마사지 업소 사장 등이 위장결혼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위장 결혼을 시인했다. 마사지 업소 사장은 결혼중개인 김 모씨의 아내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에 종업원 조달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남편에게 중국여자랑 혼인신고를 하고 여자를 데리고 오면, 그 여자가 업소에서 일을 하여 버는 돈 100만원을 매달 주겠다고 하여 함께 공모한 것이다. 이 여성은 위장결혼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로 처분하였다. 피해자는 중국인교회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노동착취 목적의 국제결혼).⁴⁰⁾

4. 채무노예로 강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 국내 여성들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된 경우, 피해 여성의 삶은 개인 선택의 자유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성매매는 일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예노동’의 공간이 되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가 정당화되는 곳이 된다.⁴¹⁾ 성매매로 유입되는 연령이 점차 저연령화 되어 유입시기가 10대 청소년 시기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학력은 56.8%가 중졸 이하로 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에 진학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다.⁴²⁾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은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로 장시간 영업할 것을 강요받고 있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한다. 일을 쉬려면 결근비로 50-10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영업시간 이외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에는 CCTV를 설치하여 감독하고, 방문을 자물쇠로 잠궜 두는 등, 물리적으로 가두는 경우도 있다.⁴³⁾ 그

39) 강성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문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례,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김춘진 위원실 주최), 10면 이하.

40) 최황규,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문제, 서울중국인교회 사례,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김춘진 위원실 주최), 10면 이하.

41) 정미례,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관점과 논의, 여성과 인권 제5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29면.

42) 정경숙, 집결지 자활사업의 성과와 제언, 여성과 인권 제5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94면 이하.

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다 심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선불금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주거비용부터 시작하여, 화장품, 홀복, 심지어 강제적인 성형수술비까지 빚에 모두 포함하여 빚을 지게 된다. 사채업자를 통한 선불금은 작게는 연 60%에서 많게는 연 2000%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지불하기 때문에 갚지는 못하고 오히려 빚이 늘어나고, 사채나 선불금에 매이게 된다.⁴⁴⁾ 여성들은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인 문제와 함께 사채에 매여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고립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⁴⁵⁾

여성들은 국내에서만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미국 등 해외로까지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다. 해외 성매매는 사채업자들에 의해 여성들이 억울하게 해외 성매매에 유입된다.⁴⁶⁾ 원정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일본에 2만 명, 호주에 1만 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미국으로 가는 성매매 여성은 보통 멕시코 등을 통해 밀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고 한다.⁴⁷⁾

5. 성관광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아동과 여성들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몇 년에 걸쳐 한국 관광객이 동남아, 태평양섬 군도 지역에서 아동 성관광의 주요 수요자라고 지적하였다.⁴⁸⁾ 특히 필리핀 현지 성관광방지관련 단체들에 의하면 필리핀에 성관광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들 중에 한국인이 가장 많다고 한다.⁴⁹⁾ 수도 마닐라 지역에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식 성매

43) 우정희, 2011 성매매 업소 집결지, 현장에서 말하다, 여성과 인권 제5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84면.

44) 정경숙, 집결지 자활사업의 성과와 제언, 여성과 인권 제5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96면.

45) 여성 중 46.8%가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위장계통이나 기관지, 폐질환을 앓고 있으며, 무리한 성행위 및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자궁 질환이나 비뇨생식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중에도 성매매를 하여 질염, 골반염, 하혈, 복통 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경숙, 앞의 논문, 95면.

46) 조선경제, 2012.06.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6/2012061600199.html

47) 조선경제, 2012.06.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6/2012061600146.html

48)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10면.

매 업소 100여 곳이, 태국에는 교민 정보지에 광고하는 한국식 성매매 업소만 30 곳이 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대에도 100여 곳의 한국식 성매매 업소가 성업 중이라고 한다. 그 밖에 캄보디아 (12여 곳 이상),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중심 30여 곳), 카자흐스탄 (10여 곳),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 5 곳), 중국 (칭따오 100여 곳, 베이징, 상하이, 대련, 톈진에도 있음) 등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형 성매매 업소’가 있다.⁵⁰⁾

문제는 대부분의 성구매자들 역시 한국에서 온 남자들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한 지방도시에 위치한 한국 기업의 공장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원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의 단체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한다.⁵¹⁾ 피해 여성들이 폭언이나 폭행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 여성들 중에는 아동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 남성들의 아동 성관광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현지에서 인신매매된 피해자들 중에는 많은 경우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 한 인신매매 단체 활동가에 의하면 성매매를 하는 한국남성들이 가장 폭력적이며,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한다고 한다.⁵²⁾ 또한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수사기관의 부패로 인해 신고되지 않거나, 합의금으로 쉽게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한국관광객이 가는 현지의 성매매 업소는 물론, 식당, 호텔, 골프장 모두가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고 한국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지 시민단체들의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⁵³⁾

성관광과 관련하여 인신매매 의정서 제3조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범행에 대해 수단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므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아동은 대부분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평의회협약 제19조는 인신매매 피해자인 것을 알았을 경우 서비스 사용자도 인신매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성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인신매매 한 자뿐만 아니라

49) Maria C. Ujano, PACT(Philippines Against Child Trafficking), 2012년 7월 필리핀방문 면담 결과.

50) 경향신문, 2011.11.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10005555

51) 경향신문, 2011.11.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10005185&code=940202

52) D. Alforte, ECPAT Philippines, 2012년 7월 필리핀 방문 면담 결과.

53) D. Alforte, ECPAT Philippines, 2012년 7월 필리핀 방문 면담 결과.

서비스 사용자에게까지 법적책임을 확장하였다. 또한 필리핀이나 미국의 경우 성 관광 참여자에게도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국가에서는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 인신매매범죄와 연관하여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여권 발급 제한 정도에 그치는 정도이며, 이 숫자마저도 일 년에 10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⁵⁴⁾

6. 부실한 입양 시스템으로 인해 착취되고 있는 아동들

얼마 전 방송에서 “두 번 버려진 사람들”라는 제목으로 입양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입양아들에 대한 취재가 있었다.⁵⁵⁾ 미국에 입양된 후 양부모로부터 성추행, 폭행⁵⁶⁾에 시달리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무국적자가 된 입양아에 대한 스토리였다. 아이의 양부모는 세금 혜택만 받고 아이의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 있었지만, 정작 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5년 넘게 항변하였으나, 불법체류자로 미국에서 추방당했다. 추방당하기 전에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10~20명 정도의 한국 입양자들이 같은 이유로 구금되어 있었다고 한다.⁵⁷⁾ 이렇게 무국적자로 미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으로 입국하는 입양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⁵⁸⁾

54) 법적으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고, 미성년의 경우에는 형법상 의제 강간죄로 처벌 가능하지만, 그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55) ‘두 번 버려진 사람들’,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21, SBS 2012.8.21. 방영.

56) 입양부모의 연령, 재산, 양자에 대한 의무사항, 장애여부, 직업 등 다양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나, 입양부모의 범죄력 특히 성범죄 및 폭력범죄,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폭력에 대응하는 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대해서는 김유경,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 73호,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면.

57) 지난 2001년에 시행된 아동시민권법은 -18세 미만의 외국인 피입양자에 대해 입양후에 입국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쉽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2001년 이전에 입양된 피입양자의 시민권 취득 현황은 알려진 바가 없다. 시민권자가 아닌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하는 피입양자의 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번 버려진 사람들’,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21, SBS 2012.8.21. 방영.

58) The Korea Times, 2012.10.10.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2/10/117_121939.html

또한, 입양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가족에 의한 납치, 곧 아동의 친척이나 가족에 의해 납치되어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되거나⁵⁹⁾, 부모 중 한 쪽만이 양도한 사례로 적절한 동의 없이 입양된 사례가 있고, 그 외에 신원위조(아동 바꿔치기), 호적위조(고아로 만들기 위해 등록된 아동들도 고아호적으로 만듦), 아동에 대한 신상서류 허위진술, 불명확한 양도(아이를 실명으로 양도하지 않음),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양도, 부모는 국내입양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해외 입양된 사례 등이 있다.⁶⁰⁾

아동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제3조에는 중개자가 입양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하여 아동 입양에 대한 동의를 부적절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착취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 또는 불법으로 입양된 경우는 아동 인신매매에 해당될 수 있다.

7. 소결

위의 사례들은 국제기준에 의하면 인신매매 범죄로 포섭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래에 열거된 국제이주기구(IOM)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에 대한 공동지표에 의하면 위의 사례들은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 착취 유형이다.⁶¹⁾

59) 입양시 친부모, 직계존속,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불분명하며 친생 부모의 입양동의 후 취소에 대한 조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서 친생부모의 법적인 양육권 보장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김유경,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73호,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면.

60) J. Jeong Trenka, 입양체제에서의 인권침해: 무엇이 문제인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9.11.10, 9면 이하.

61)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방지교육 지침서, 피해자 식별 및 인터뷰 기술, 2011, 17면 이하.

-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거나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다.
-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약속 받은 일의 형태와 급여, 근로조건이 다르다.
- 선불금으로 인해 채무가 있거나 (이탈금 또는 고액의 관리비가 있다.)
- 채무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
- 수입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다.
- 노동의 대가로 돈을 거의 받지 못한다.
-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
- 불결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거나 고요인과 함께 산다.
-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
-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늘 감시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 절상, 화상, 멍과 같은 가시적인 신체적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매일 일정액을 벌어야 하거나 일정수의 고객을 접대한다.
- 복종적인 행동을 보인다.
- 우울증, 불안, 자해, 자살 행위와 같은 감정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문제를 보인다.
- 상업시설(성매매업소, 가라오케, 클럽, 마사지업소 등)에 창살이 설치된 창문, 잠긴 문, 고립된 장소, 전자감시와 같은 강력한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성적 학대나 희롱을 당했다.

하지만 현재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기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 국제기준에 따라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가 비정규 이주자로 간주되어 제대로 식별되지 않은 채 즉시 추방되거나 구금시설에 보내지기도 하고,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⁶²⁾

62) 박수미,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자여성 지원시설, 2012년 8월 방문 면담 결과.

제3장

인신매매 관련 해외입법례 검토

어진이

인신매매 관련 해외입법례 검토

제1절 필리핀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1. 필리핀의 인신매매 상황 및 인신매매방지법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미국부무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이 필리핀에서 발생될 뿐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필리핀을 경유해 가기도 하며 또 필리핀으로 유입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⁶³⁾ 필리핀 내에 있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가사노동자로 해외로 내몰리면서 강간과 폭행 그리고 성적 학대에 직면하기도 하고, 엔지니어나 간호사 같은 전문직의 필리핀 이주민 노동자들은 해외에서 강제노동에 노출되기도 한다.⁶⁴⁾

필리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 또한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지방에서 마닐라, 세부, 엔

6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84면.

64) 필리핀 여성들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 그리고 일본 이외에 많은 중동 국가들에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젤 씨티, 그리고 민더나오를 포함한 도시로 유입되어 강제 가사 및 공장 노동, 강제 구걸, 그리고 성산업에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남성들은 주로 농업, 어업, 해양산업에서 강제 노동과 채무노예로 착취당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에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은 폭력, 협박, 비인간적인 근로조건, 임금체불 등의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여행서류와 신분증명서가 압수된 채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⁶⁵⁾

위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 가운데 필리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입법운동이 시작되었고, 2003년 5월 26일 인신매매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필리핀의 인신매매방지법은 필리핀이 비준한 인신매매의정서를 바탕으로 법률프레임을 만들었고, 그 이외에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등과 같은 협약들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⁶⁶⁾ 필리핀의 인신매매방지법은 그 동안 인신매매 관련 현행법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는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인신매매범을 효과적으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였다.⁶⁷⁾

2. 인신매매 개념정의

필리핀의 인신매매방지법에 의하면 인신매매란 “성매매 등 성착취, 강제노동, 노예 또는 노역, 장기매매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나 인지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 위협, 무력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권력이나 지위의 남용,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상 또는 혜택의 제공 등의 수단에 의해, 국경 내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모집,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 라고 정의

65)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85면.

66) Maria Stella O. Echano, Country Coordinator of ‘terre des homes’ (Netherlands), 2012년 7월 필리핀 방문면담 결과.

67) N. Vilches, Trafficking of Women and Children, Expert Law (submitted January, 2004)
http://www.expertlaw.com/library/domestic_violence/Philippines_trafficking.html

하고 있다.⁶⁸⁾ 위 정의는 인신매매의 목적, 수단, 행위에 있어서 인신매매 의정서와 거의 동일하며, 인신매매범죄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정의에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성착취(sexual exploitation)’는 위협, 기만, 강압, 납치, 무력, 권력남용, 채무, 사기,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성매매 또는 포르노그래피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매매(prostitution)’는 금품, 재산상 이익 또는 그 밖의 목적의 거래를 위하여 성교행위나 음란행위에 타인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거래, 음모 또는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⁶⁹⁾,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는 실제 혹은 가상으로 노골적인 성행위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사람의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을 출판, 전시, 영상, 외설적 공연, 정보화 기술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단을 이용하여 묘사한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⁷⁰⁾ ‘채무노예(debt bondage)’는 채무변제를 담보로 채무자를 통제 하에 두고 채무자로 하여금 서비스나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며, 이때 서비스의 기한과 성격이 정의 되어 있지 않거나 채무자의 서비스의 가치가 채무변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강제노동과 노예제(forced labor and slavery)’는 유인, 폭력, 협박이나 위협 위력이나 강압, 자유의 박탈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도덕적 우위의 남용, 부채 또는 기만을 이용해 사람으로부터 노동력이나 서비스를 착취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⁷¹⁾

그 밖에 ‘아동’은 18세 이하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18세 이상이지만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 장애나 질환으로 인해 학대, 방치, 착취 혹은 차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돌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⁷²⁾

68) Sec3(a),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Republic Act 9208).

69) Sec3(c),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70) Sec3(h),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71) Sec3(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72) Sec3(b),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3. 인신매매행위 범죄화와 처벌

가. 인신매매행위의 유형과 처벌

위의 인신매매 정의를 바탕으로 필리핀의 인신매매방지법은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인신매매 행위들을 최대한 포섭하여 구체적으로 범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성착취, 강제노동, 노예제, 비자발적 노역 혹은 채무 노예의 목적으로 국내외에 일자리, 연수, 견습을 제안하는 행위⁷³⁾, 같은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결혼을 구실로 사람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⁷⁴⁾, 또는 결혼 또는 위장 결혼을 제안하거나 결혼하는 행위⁷⁵⁾, 위의 목적으로 타인을 입양하거나 그 입양 절차를 지원하는 행위⁷⁶⁾, 성관광에 가담하거나 성관광을 기획하는 행위⁷⁷⁾, 성매매나 포르노그래피를 목적으로 타인을 지배하에 두고 있거나 고용하는 행위⁷⁸⁾, 필리핀 또는 해외에서 무장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운송 또는 입양하는 행위⁷⁹⁾, 장기나 신체의 일부를 적출하거나 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의 타인을 고용, 입양, 혹은 납치하는 행위⁸⁰⁾ 등이 이에 속한다.

필리핀에서는 위의 행위들에 대해 징역 20년과 1~2백만 페소(약 2,700~5,400만 원)의 벌금이라는 높은 형을 주고 있다.⁸¹⁾ 기소와 관련하여 미국무부의 2012년 인

73) Sec4(a),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74) Sec4(b),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75) Sec4(c),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76) Sec4(f),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77) Sec4(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78) Sec4(e),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79) Sec4(h),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UN은 분리주의자 그룹인 The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와 New People's Army(NPA)를 무력 분쟁으로 아이들을 강제 징집하는 아주 오래된 가해자로 여기고 있다. Abu Sayyaf Group이 아이들을 전투원과 비전투원으로 징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UN에 계속 보고되고 있다. 필리핀 군대는 올 한해 8명의 소년병을 구출했으며, 이들 모두는 NPA에 의해 강제 징병되었던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Ch6.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U.S. Department of States, 2011 참조.

80) Sec4(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81) Sec10(a),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고기간 동안 29명의 인신매매범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실제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고하였다.⁸²⁾ 이와 같이 필리핀의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의정서에 따라 필리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착취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범죄화하고 있으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강제노동이나 노예제와 같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의와 함께 착취유형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2011년 2월에 2명의 여성을 말레이시아로 팔아 넘겨 9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가사 노동자로 강제노동을 하게 한 인신매매범이 기소되어 28년의 징역형과 2만8천 달러(USD)의 벌금형에 처해졌다.⁸³⁾ 그리고 그 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기소가 시작된 것은 필리핀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나. 인신매매행위의 가중처벌 및 조장행위 처벌

필리핀 인신매매방지법은 또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제4조에서 언급한 위반행위에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⁸⁴⁾, 입양법 (Inter-Country Adoption Act 1995)에 준한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목적이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성착취, 강제노동 혹은 채무노예일 경우⁸⁵⁾, 인신매매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⁸⁶⁾, 인신매매범이 존속, 부모, 형제자매나 후견인, 혹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혹은 공무원일 경우⁸⁷⁾, 인신매매 피해자가 군인 또는 사법종사자와의 성매매를 위해 모집되었을 경우⁸⁸⁾, 인신매매범이 군인 또는 사법종사자일 경우⁸⁹⁾, 인신매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정신이상,

8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86면.

8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1, 296면.

84) Sec6(a),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85) Sec6(b),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86) Sec6(c),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87) Sec6(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88) Sec6(e),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장애, 혹은 HIV/AIDS 감염으로의 피해를 입을 경우⁹⁰⁾에는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이 경우, 종신형과 2백만 페소 이상 5백만 페소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기소된 자는 보석으로 석방될 수 없다.⁹¹⁾

인신매매를 방조하는 행위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 건물이 인신매매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한 행위⁹²⁾, 상담증명서, 등록증, 정부 관계기관의 증명서 등을 조작하여 발행 혹은 배포하는 행위⁹³⁾, 정부의 규제사항과 출국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⁹⁴⁾, 인신매매를 조장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책자, 전단, 혹은 선전 내용을 광고, 출판, 인쇄, 방송 혹은 배부할 경우⁹⁵⁾, 공무원 또는 개인이 정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허가 및 출국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허위진술 혹은 기만을 돕는 행위 또는 국제공항이나 지역공항, 국경, 항구 등에서 출입국을 돕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미발행, 조작된 혹은 허위의 여행 서류를 소지한 경우⁹⁶⁾, 피해자의 여권, 여행 서류 혹은 개인 서류나 소지품을 압수, 은닉 혹은 훼손하는 행위⁹⁷⁾, 그리고 피해자가 강제노동, 예속, 노예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피해자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노동 혹은 서비스로부터 경제적인 혹은 기타의 이익을 얻는 경우⁹⁸⁾가 이에 포함된다.

다. 인신매매 처벌의 법적책임 확대

이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신매매 방지법은 법적 책임을 더욱 확장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피해자로부터 성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자도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최초 위반 시에는 5만페소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법원에서

89) Sec6(f),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90) Sec6(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91) Sec10(c),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92) Sec5(a),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93) Sec5(b),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94) Sec5(c),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95) Sec5(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96) Sec5(e),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97) Sec5(f),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98) Sec5(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6개월의 사회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재위반 시에는 징역 1년과 10만 페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⁹⁹⁾ 필리핀은 이렇게 성구매자가 성매매방지법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방지법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확장하여 인신매매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기타

그 밖에 처벌과 관련하여 인신매매범죄로 인해 발생된 수익이나 재산은 몰수되어 신탁기금(Trust Fund)으로 가게 되며¹⁰⁰⁾, 정부부처 간 인신매매 대책협의회(Inter-Agency Council Against Trafficking, IACAT)를 통해 피해자보호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지원, 연구, 시스템 모니터링, 관련시민단체 지원,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각종 세미나 지원이나, 교육 캠페인 등을 위해 사용된다.¹⁰¹⁾

4. 피해자 보호 및 인신매매범죄 예방

가. 피해자 동의의 무관성

필리핀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의나 인지 여부는 무관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인신매매 사건에서 인신매매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신매매범죄의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경감시키지 못한다.¹⁰²⁾ 그러므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인지에 관한 증거 제출은 인신매매 사건에서는 무의미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은 피해자로 간주되고,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은 인신매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신매매범죄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¹⁰³⁾

99) Sec11(a), (b),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00) Sec14,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01) Sec15,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02) Sec3(a),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03) Sec17,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들

인신매매방지법은 정부가 피해자의 회복, 재활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 상담, 법률 서비스, 의료서비스 또는 심리치료 서비스, 취업기술훈련, 교육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¹⁰⁴⁾ 이에 따라 현재 필리핀 정부는 사회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42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¹⁰⁵⁾ 그 밖에 인신매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안전한 쉼터와 일정액의 생활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¹⁰⁶⁾,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생활권이 존중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¹⁰⁷⁾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수수료가 면제된다.¹⁰⁸⁾

만약 다른 국가에서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곤경에 처한 재외 필리핀인’(overseas Filipino in distress) 으로서 이주노동자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사관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¹⁰⁹⁾ 만약 본국으로의 송환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경우, 해당국가와 논의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¹¹⁰⁾ 본국송환 관련 시행령에서는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입국 시에 사회복지개발부의 관계자를 통해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부터 에스코트를 받을 수 있다.¹¹¹⁾

104) Sec23,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05) Dr. Marcelina Orque, Director of Peace and Development Center, 공익법센터 어필 주최 ‘필리핀의 인신매매상황’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제 (2012.09.07).

106) Sec18,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07) Sec7,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08) Sec13,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09) Sec24,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10) Sec25,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11) Sec31,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정부기관의 의무

필리핀 인신매매방지법에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각 정부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분이다. 제16조에서는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재활 프로그램 및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여, 관련 정부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¹¹²⁾ 외무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에서는 피해자가 해당국가에 어떻게 입국하였는가에 상관없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해당국가 정부 기관들과도 협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 전, 출국 전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¹¹³⁾

사회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에서는 피해자 재활 및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센터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시민단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센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다.¹¹⁴⁾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에서는 국내, 해외고용 관련 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보고할 수 있게 하였다.¹¹⁵⁾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서는 인신매매범들의 기소에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케이스만을 다룰 수 있는 전문검사를 세워 교육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개발부 및 시민단체들과의 협력 아래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¹¹⁶⁾

필리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에서는 관련 정부기관과 함께 인신매매와 관련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정하도록 하였다. 그

112) Sec16,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13) Sec16(a),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14) Sec16(b),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15) Sec16(c),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16) Sec16(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리고 인신매매가 여성과 관련된 이슈로 포함되어 국내외에서 옹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였다.¹¹⁷⁾

출입국 전담부서(Bureau of Immigration)에서는 이민법 및 국제결혼을 포함하여 외국인과 관련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며, 인신매매범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출국, 입국 시에도 체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에는 해외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해외고용청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조문서 구별 방법과 인신매매되는 경유국, 종착지 등 인신매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교육하도록 하였다.¹¹⁸⁾ 2010년 8월, 출입국은 항구에서의 새로운 감시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는 적절한 양식의 문서 부족과 불법 모집과 인신매매의 위협의 수위가 높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사용되어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된 2만 8천명 이상의 피해자를 중도에 구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9백 개 이상의 사건이 정부부처 간 인신매매 대책협의회, 출입국, 해외 고용청, 그리고 외부무에 더 심도 깊은 조사를 위해 회부되었다.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주요 항구에서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1,800 명 이상의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중도에 구조했으며, 이중 21개의 사건은 형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¹¹⁹⁾

필리핀경찰국(Philippine National Police)은 주요 법집행 기관으로 인신매매범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감시, 수사하고 체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나 긴급전화를 받도록 하고, 필요시에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였다.¹²⁰⁾

필리핀 해외고용청(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에서는 “고용 전” 오리엔테이션이나 세미나 그리고 출국 전에 상담을 받도록 하였다. 해외고용의 현실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인신매매피

117) Sec16(e),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18) Sec16(f),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19)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1, 298면.

120) Sec16(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해가 발생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였다.¹²¹⁾ 이에 따라 필리핀 해외고용청은 해외로 나가 일하기 전에 10만 여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1,539번의 “배치 전” 오리엔테이션 세미나와 583 번의 “고용 전”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노동부와 함께 불법 모집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 세미나에는 검사, 법집행처 관계자, 그리고 지역정부, NGO 관계자, 고용업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였다.¹²²⁾

지역정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Local Government)에서는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인신매매방지 캠페인을 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형사소송케이스 기록을 위한 데이터뱅크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 가정들이 스스로 인신매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¹²³⁾ 지역정부(Local government units)에서는 해당지역의 인신매매 케이스를 모니터링하고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신매매방지법을 위반한 업소의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인신매매범들이 효과적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차원에서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¹²⁴⁾

그 밖에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에서는 필리핀의 교육부, 관광부, 보건부, 인권위원회, 아동복지부, 국가수사국, 초국가범죄센터 등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¹²⁵⁾ 예를 들어, 관광부에서는 성관광 근절을 위한 방침을 세우고, 관광 보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독 및 조사와 피해자 구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였고¹²⁶⁾, 교육부에서는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특히 남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였다.¹²⁷⁾ 인권위원회에서는 필리핀이 비준한 인신매매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도록 하였다.¹²⁸⁾ 아동복지부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정책 및 프로그램을

121) Sec16(h),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2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1, 287면.

123) Sec16(i),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24) Sec16(j),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25) Sec18,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26) Sec18(b),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27) Sec18(c),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28) Sec18(f),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²⁹⁾ 이처럼 필리핀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통합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아동과 여성의 보호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인신매매 정의에 열거된 수단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가 행해졌을 경우에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⁰⁾ 필리핀의 시민단체들은 아동과 관련된 조항을 시행령(Rules and Regulations)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¹³¹⁾ 예를 들어,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 특별보호법과 ‘아동 증인신문에 대한 법칙(Rule on Examination of a Child Witness)’에 따라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에 의해 오디오로 녹음된 혹은 비디오로 녹화된 단 한 번의 인터뷰만을 허용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 방식으로 피해자 아동이 반복되는 질문들에 의해 또 다른 정신적 외상을 피할 수 있다.¹³²⁾

여성이나 소녀들이 피해자일 경우, 성폭행 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가 다른 성적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 하거나 피해자들의 성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범죄자가 제공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강간피해자 지원 및 보호법에 의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진 범죄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여성 경찰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¹³³⁾ 이렇게 여성과 아동에 관련된 사건들을 다룰 때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는 관행은 모범적이다.

129) Sec18(j),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30) Sec18(j),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31) Maria Stella O. Echano, Country Coordinator of ‘terre des homes’ (Netherlands), 2012년 7월 필리핀 방문면담 결과.

132) Sec32(e),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33) N. Vilches, Trafficking of Women and Children, Expert Law (submitted January, 2004)
http://www.expertlaw.com/library/domestic_violence/Philippines_trafficking.html

마. 정부부처 간 인신매매 대책협의회

(Inter-Agency Council Against Trafficking, IACAT)의 역할

필리핀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부처 간 인신매매 대책협의회(Inter-Agency Council Against Trafficking, IACAT)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의장으로 사회복지개발부 장관이 공동 의장으로 선임되며, 그 외의 구성원들은 외무부, 노동부, 해외고용부, 출입국, 법집행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와 NGO(3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¹³⁴⁾ 정부부처 간 인신매매 대책협의회의 중요한 역할로는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 계획, 새로 제정된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반포, 법의 엄격한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 각 부처간 프로젝트를 조정, 대대적인 캠페인 운동 진행,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즉각적 대처를 지시, 인신매매범에 대한 소송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정보의 공유, 인신매매에 대한 꾸준한 조사와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¹³⁵⁾

지난해 정부부처 간 인신매매 대책협의회는 마닐라의 국제공항(Ninoy Aquino) 인신매매방지 전담반에 직원채용을 늘렸으며, 전담반은 고위 항공사 직원, 항공 경찰, 검찰 그리고 사회복지개발부의 복지사들에 의해 24시간 동안 계속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24시간 핫라인 상담 전화를 시작하였고, 검사, 법 집행 요원, 사회 복지사, 그리고 NGO단체들로 구성 된 4개 지방의 인신매매 방지 전담반이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지역에 조직되었다.¹³⁶⁾ 그밖에 판사들이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인신매매에 대해 필수교육 세션을 운영하였으며,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경찰, 법 집행 공무원, NGO 단체들, 그리고 해외 기부자들에게로까지 확대하였다.¹³⁷⁾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NGO 단체들은 판사, 검사, 사회 복지사 그리고 법 집행 공무원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인신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여 성공적인 기소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134) Sec20,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35) Sec21,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36)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1, 298면.

13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86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¹³⁸⁾

바. 외국인 피해자 보호의 불충분성

필리핀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필리핀은 국내외 인신매매 피해자가 대부분 자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은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언급은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제19조항에 있는 내용이 전부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인신매매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자 기소를 위해 체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다.¹³⁹⁾ 체류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5. 인신매매방지법 이행의 어려움

필리핀에서는 국제기준이 반영된 이상적인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이행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정부 관계자들의 부패함에 있으며, 이는 인신매매범들의 활발한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¹⁴⁰⁾ 불시 단속 중에 인신매매범들이 도주하는 것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갈취하거나,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는 업소들로부터 돈 혹은 성을 상납받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난 해에 정부가 인신매매에 연루된 관련 공무원들의 신원을 파악 및 기소하려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인신매매와 연루되어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일시적으로 정직되기도 하였다.¹⁴¹⁾

그 밖에 알선업체 및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만 체포되거나, 유죄판결 비율이 낮

138) Dr. Marcelina orque, Director of Peace and Development Center, 공익법센터 어필 주최 ‘필리핀의 인신매매상황’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제 (2012.09.07.).

139) Sec19,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소송결정을 위해서는 59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Sec47,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

140) Maria C. Ujano, PACT(Philippines Against Child Trafficking), 2012년 7월 필리핀방문연담 결과.

14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86면.

은 것과 미결 상태로 계류 중인 소송들이 많이 있는 것¹⁴²⁾, 취약한 사법체계, 검사수의 부족, 그리고 폭력조직의 협박 및 돈으로 합의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등 범죄자 기소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일관성 없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 노력은 큰 과제로 남아있다.¹⁴³⁾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묵인 또한 인신매매 방지법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 “우편주문 신부법”으로 알려진 필리핀의 RA 6955는 우편 주문 및 그와 비슷한 관행들, 예를 들어 광고, 출판, 브로셔, 전단지, 그리고 다른 선동 매체의 제작과 배포를 바탕으로 필리핀 여성들과 해외 남성들의 결혼을 주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도 제시하고 있다.¹⁴⁴⁾ 하지만 정부의 자원 부족과 함께 지역사회가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는 이와 같은 관행들에 대한 알고 있지만, 범죄를 묵인함으로써 이러한 산업들이 호황을 누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 이러한 불법 모집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인신매매가 경제적 이득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고,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여성들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¹⁴⁵⁾

필리핀에서는 법 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명목상 인신매매방지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수년간의 옹호 활동과, 인신매매방지법이 통과되고 제정되는 과정에서의 모든 노력들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제고 효과가 제법 컸다. 또한 제정된 이후에도 학교와 지역차원에서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커뮤니

142) 필리핀 법원은 현재 680개의 인신매매 관련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143) Dr. Marcelina orque, Director of Peace and Development Center, 공익법센터 어필 주최 ‘필리핀의 인신매매상황’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제 (2012.09.07); Maria C. Ujano, PACT(Philippines Against Child Trafficking), 2012년 7월 필리핀방문 면담.

144) Republic Act No 6955 (“An act to declare unlawful the practice of matching Filipino women for marriage to foreign nations on a mail order basis and other similar practices including the advertisement, publication, printing or distribution of brochures, fliers and other propaganda materials in furtherance thereof and providing penalty therefore”).

145)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85면.

터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2011년 한 해 동안 핫라인 콜센터를 통해 7,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 되고, 이로 인해 약 70건의 소송 접수 및 11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본국 송환으로 이어졌다.¹⁴⁶⁾

제2절 미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1.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미국은 1998년 3월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의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행정각서(Executive Memorandum)를 공포한 이래로, 기존의 '3D(detention, deportation, disempowerment)' 패러다임에서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반영한 '3P(prosecution 기소, protection 보호, prevention 방지 AND partnership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¹⁴⁷⁾ 미국은 포괄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제정에 앞서 현행법이 인신매매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범죄자를 처벌하기에 부적절하며, 다양한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이 부재하여 인신매매범죄자들이 종종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에만 그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반해 피해자들은 불법입국, 불법노동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불리하게 처벌을 받고 있어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UN 총회가 인신매매 의정서를 채택하기 바로 전인 2000년, 포괄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2000)을 제정하였다.¹⁴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현대판 노예제도와도 같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처벌을 확립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3P'

146) Dr. Marcelina Orque, Director of Peace and Development Center, 공익법센터 어필 주최 '필리핀의 인신매매상황'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제 (2012.09.07.).

14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0, 12면 이하.

148) 22 United States Code §7101(19), (이하, USC로 표기,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이 미국연방법(USC)에 코드화된 것임). 미국은 2005년 11월 3일에 인신매매 의정서에 비준하였다.

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기초로 하여 2003년, 2005년 그리고 2008년 개정을 거쳐 왔다.

미국은 현재 28개의 주(55%)가 미연방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을 반영한 인신매매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중 워싱턴과 매사추세츠 그리고 일리노이 주 등을 포함하여 21개 주가 폴라리스 프로젝트(Polaris Project)¹⁴⁹⁾의 기준에 따라 의해 1등급을 받았다.¹⁵⁰⁾ D.C.와 47개 주에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관련 형법이 있고, D.C.와 49개 주에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관련 형법이 있다.¹⁵¹⁾

2. 인신매매 개념정의 및 처벌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신매매의 발생, 경유 및 종착국이며 성매매 업소, 마사지업소, 호텔서비스,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건설업, 청소용역, 간병, 가사노동 등을 통해 강제노동, 채무노역, 비자발적 노역 그리고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멕시코, 필리핀, 대만,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에서 온 이주자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한국여성들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다.¹⁵²⁾

가. 성착취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중범죄 인신매매’는 1) 타인에게 무력, 사기 또는 강압을 통해 상업적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18세 미만인 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또는 2) 비자발적 노역, 채무노역, 채무

149) Polaris Project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단체이다.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 정책 제언, 핫라인 운영, 옹호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model law를 만들어 각 주 정부가 포괄적인 인신매매법을 제정하도록 돕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http://www.polarisproject.org/index.php> 참조

150) <http://www.polarisproject.org/what-we-do/policy-advocacy/current-laws> 폴라리스 프로젝트에서 각 주를 대상으로 인신매매 법안 및 인신매매 퇴치 노력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있다.

151) <http://www.polarisproject.org/media-center/press-releases/634-majority-of-states-actively-passing-laws-to-combat-human-trafficking>

15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0, 359면 이하.

속박 또는 노예를 목적으로 무력, 사기 또는 강압을 통해 사람을 모집, 은닉, 이송, 공급 또는 사람의 노동이나 서비스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¹⁵³⁾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상업적인 성행위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은닉, 이송, 공급 또는 사람의 노동이나 서비스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¹⁵⁴⁾ 여기서 ‘강압’은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나 신체적 감금 협박, 부작위가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나 신체적 감금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도록 하는 책략, 계획 또는 패턴 또는 법적 절차의 남용 및 남용 협박이라고 정의하였다.¹⁵⁵⁾ 위의 ‘중범죄 인신매매’를 행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도록 하였다. 만약 이런 인신매매 범죄가 사망, 납치 또는 시도한 자, 가중한 성적 학대 또는 이를 시도한자, 살인 미수를 동반하였을 경우에는 종신형을 부과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다.¹⁵⁶⁾

‘강제노동’의 정의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1) 무력, 위협, 신체적 감금, 중대한 위해나 신체적 감금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협이나 2) 타인에게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대한 위해나 신체적 감금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도록 하는 책략, 계획, 패턴 그리고 3) 법적절차를 남용하여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¹⁵⁷⁾

곧,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인신매매란 성착취 중에서도 상업적 성착취와 노동착취 또는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무력, 사기, 강압, 신체적 감금, 중대한 위해나 감금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협, 법적절차 남용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모집, 은닉, 이송, 공급, 또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상업적 성행위’는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 인한 성행위라고 정의했다.¹⁵⁸⁾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법원에서는 상업적 성행위의 정의에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가 포함된다고 판결하고 있다.¹⁵⁹⁾ 미국의

153) 22 USC §7102(8).

154) 22 USC §7102(9).

155) 22 USC §7102(2).

156) 18 USC §1589, 1590.

157) 18 USC §1589.

158) 22 USC §7102(3).

경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상업적 성행위만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결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편주문 신부(mail order brides)’를 포함하여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결혼으로 인해 피해자가 착취를 당했다면 ‘국제결혼 중개법(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2005)’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결혼중개업소의 브로커가 중개한 결혼의 목적이 의뢰인을 도와 타인을 성매매에 강제로 유입시킬 목적이라면 상업적 성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브로커와 의뢰인 모두 인신매매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¹⁶⁰⁾

2008년에 개정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은 강제노동에 대해 ‘강제노동과 관련된 서비스나 노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것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미필적 고의로(reckless disregard) 방치한 행위’ 또한 처벌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강제노동의 수단 중에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대한 위해’나 신체적 감금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도록 하는 책략, 계획, 또는 패턴, 또는 ‘법적절차’를 남용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의와 함께 추가 되었다. ‘중대한 위해’란, 신체적 또는 비신체적 피해로, 정신적, 재정적, 또는 명예 훼손적 피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어떠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모든 주변 상황으로 인해 위험을 느끼고, 피해를 피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중대한 위해’를 뜻한다고 정의하였다.¹⁶¹⁾

여기서 ‘법적절차의 남용’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중압감을 주기 위해 행정, 민사, 또는 형사절차에 상관없이 법률 또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는데 남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¹⁶²⁾ Catalan v. Vermillion Ranch Ltd., 케이스에서는 이민법 규정을 어길 경우 강제추방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은 법적절차를 남용하는 것이며, 실제로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는지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¹⁶³⁾

159) United States v. Marcus (Marcus I) 487 F. Supp. 2d 289 (E.D.N.Y. 2007).

160) 18 USC §1589.

161) 18 USC §1589.

162) 18 USC §1589.

163) M. Y. Mattar, Interpreting Judicial Interpretations of the Criminal Statutes of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en Years Later, 19 American University Journal of Gender, Social Policy and the Law 2011, 10면.

그 밖에 의도적으로 타인의 여권, 이민서류 또는 신분증명서류를 없애거나, 감추거나, 빼앗거나, 소지하여 타인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받도록 하였다.¹⁶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정의에는 상대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수단이 포함되지 않는 대신에 여권을 압수하는 것을 별도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 중에 ‘법적절차 남용’이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취약한 체류자격을 이용하는 경우가 포괄될 수 있다.

2008년 개정된 인신매매 보호법은, 타인을 비자발적인 노역이나 노예로 팔기 위해 납치하거나, 유인, 설득, 유도하여 승선하거나 다른 장소로 보낸 자는 벌금형이나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도록 하였고, 만약 사망, 납치, 또는 이를 시도한 자, 가중한 성적 학대, 또는 이를 시도한 자, 살인 미수를 동반하였을 경우, 종신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¹⁶⁵⁾ ‘기타 사기행위’를 추가하여 의도적으로 미국 외에서 사기, 허위, 위조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두 가지 모두 선고하도록 하였다.¹⁶⁶⁾

나. ‘취약한 지위’ 개념표지의 부재

인신매매의 정의에서 목적, 수단, 행위에 있어서 인신매매 의정서의 정의가 대부분 반영되기는 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 의정서는 타인을 노예로 소유하거나 물리적 지배 아래 두지 않아도 상대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착취하였을 경우 부당한 위압을 주는 것만으로도 인신매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 정의는 그 수단에 있어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형법을 넓게 해석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United States v. Castaneda*(2001)사건에서 미국 상소법원은 필리핀에

164) 18 USC §1592.

165) 18 USC §1583.

166) 18 USC §1351.

서 온 3명의 어린 소녀들을 속여 이들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남성에게 ‘취약한 피해자 증진원칙(vulnerable victim enhancement doctrine)’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¹⁶⁷⁾ United States v. Sabhnani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익숙하지 않는 곳에서 가족과 친구, 종교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고, 법률, 문화, 그리고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강압과 위협, 신체적 감금과 채무노역에 노출될 수 있으며, 대부분 인신매매범죄자로부터의 보복과 강제추방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신고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피해자(vulnerable victim)’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약한 피해자 증진원칙(vulnerable victim enhancement doctrine)’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¹⁶⁸⁾

다. 아동의 인신매매와 성관광

2003년에 개정된 인신매매 보호법은 아동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기존의 ‘무력, 위협, 강압, 미필적 고의(reckless disregard)’에 의한 아동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사기(fraud)’를 추가하였고, ‘운송’ 뿐만 아니라, ‘모집, 유인, 은닉, 운송, 제공, 획득’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자는 무력, 위협, 사기, 강압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5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을 부과함으로써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다. 위의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는 최소 10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¹⁶⁹⁾

성관광과 관련하여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은 성관광 범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을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관광 관련 범죄자에게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¹⁷⁰⁾ 미국연방법 18편 2423조(18 USC 2423)에 따르면 불법성행위, 곧 18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으로 여행

167) United States v. Castaneda 239 F.3d 978 (2001).

168) M. Y. Mattar, 앞의 논문, 4면.

169) 18 USC §1591.

170) Sec 236, TVPRA of 2008.

을 시도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위의 불법성행위를 행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위의 불법성행위를 주선, 유도, 제공 또는 도모한 자 모두 최고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필리핀의 9살, 12살 소녀들과의 불법성행위를 위해 필리핀으로 가려던 중에 LA공항에서 체포되어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있어 실제 범죄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동 성관행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았다.¹⁷¹⁾

라. 법적 배상명령

인신매매 처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법원이 인신매매범죄자에게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법적배상(mandatory restitution)’을 명령하도록 한 것이다.¹⁷²⁾ 그리고, 인신매매범죄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재산이나 그 범행을 조장하는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정부가 몰수하도록 하였다.¹⁷³⁾ 외국인의 경우, 인신매매 범죄에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 물자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고,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도 지난 5년간 불법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아 왔거나, 그런 경제적 혜택이 불법행위에 의한 것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¹⁷⁴⁾

171) U.S. v. SELJAN, 512F.3d 1203 (2008).

172)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서비스나 노동에 대한 가치 또는 총소득 이상, 또는 최저임금 및 초과 근무수당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18 USC §1593(b),(c).

173) 18 USC §1594(d),(e).

174) 8 USC §1182(a)(2), 혜택을 받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3.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미연방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자의 안전한 ‘통합(integration)’, ‘재통합(reintegration)’ 또는 ‘정착(resettlement)’이다.¹⁷⁵⁾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비정부기관을 통한 전화상담 서비스¹⁷⁶⁾ 그리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금된 이주자를 위해서는 해당정부와 비정부기관과 협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존엄성과 안전을 존중하여 적합한 지역사회나 가족에게로 안전한 통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의 자발적인 귀국과 정착도 지원하도록 하였다.¹⁷⁷⁾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연방정부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범죄 피해자로서의 부적절한 시설에 구금되지 않으며,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신매매 범죄자로부터의 협박과 보복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고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하였다.¹⁷⁸⁾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피해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¹⁷⁹⁾ 그 밖에 인신매매 피해자가 미국의 해당 지방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 수임료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¹⁸⁰⁾

미연방정부는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국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의 해당 관계자들이 청소년 피해자를 포함한 중범죄 인신매매 피

175) 22 USC §7105(a)(1).

176) 미연방 보건 및 복지서비스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지원으로 NGO 들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한해 동안 핫라인을 통해 16,000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 43%가 증가한 수치이다.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365면.

177) 22 USC §7105(a)(1)(F).

178) 22 USC §7105(c)(1).

179) 22 USC §7105(c)(2).

180) 18 USC §1595(a).

해자를 식별하고 피해자로 판단되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 및 지방 공무원에게도 피해자 파악과 보호를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¹⁸¹⁾

나. 외국인과 아동 피해자의 보호

인신매매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경우에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피해자가 ‘증명서(certification)’를 발급받거나 동반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¹⁸²⁾ 이 증명서는 피해자가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경우 발급되며, 신체적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와 같은 요청에 협력할 수 없는 자 또는 인신매매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체류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¹⁸³⁾ 그 유효기간은 인신매매 범죄자를 기소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고,¹⁸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민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신매매범죄용의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동안 연방경찰은 인신매매범죄자와 관련자의 협박 또는 보복으로부터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 인신매매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¹⁸⁵⁾ 하지만 외국인이 소송과정에서 성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안보장관을 그 외국인의 체류 허가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사법절차에 협력하는 것을 체류의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¹⁸⁶⁾

아동의 경우 인신매매의 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한 임시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속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적격여부 결과를 24시간 내에 법무부장관과 국토안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동이 지원을 받을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자격증서(Letter of Eligibility)’를 발급 받아 90일까지 임시지원 기간이 지

181) 22 USC §7105(c)(4).

182) 22 USC §7105(B).

183) 22 USC §7105(b)(E)(i).

184) 22 USC §7105(b)(E)(ii).

185) 22 USC §7105(c)(3)(A)(ii).

186) 22 USC §7105(c)(3)(A)(iii).

속되며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어른과 달리 아동은 법 집행에 관련된 협조를 조건으로 자격 증서를 받지 않는다.¹⁸⁷⁾

다. 피해자의 체류를 위한 T 비자발급 제도

이렇게 피해자가 인신매매의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신매매 범죄 수사 및 기소를 위해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체류를 허가하는 T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¹⁸⁸⁾ T 비자의 자격요건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이거나, 인신매매로 인하여 미국, 미국령 사모아(American Samoa), 북마리아나제도(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입국항(port-of-entry)에 실제로 거주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신매매 행위와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 법 집행기관의 의 정당한 협조에 응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심각한 위해를 포함하는 극도의 고통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거나,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로 인해 정식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경우는 제외된다.

T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에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미연방정부는 T 비자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계가족에 대한 파생적 T 비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피해자가 21세 미만인 경우 배우자(T-2), 자녀(T-3), 부모(T-4) 와 18세 미만의 미혼인 형제자매(T-5)를 위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21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T-2, T-3, T-4의 발급 숫자에는 제한이 없지만 T-1 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다.¹⁸⁹⁾ T 비자는 4년 동안 유효하며, 조사 및 기소 지원을 위해 체류기간을 더 연장 할 수 있다.¹⁹⁰⁾

T 비자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노동허가서가 발급되며, 그 밖에 식료품 할인 구매권, 재정적 지원, 의료 지원, 교

187) 22 USC §7105(F),(G).

188) 8 USC 1101(a)(15)(T).

189) 8 USC §1101(a)(15)(T).

190) 8 USC §1184(p)(6).

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T 비자 신청자 동반가족들도 T 비자가 허가되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¹⁹¹⁾

T 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서 3년의 체류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T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유효한 T 비자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최소 3년 동안 체류하였거나 또는 법무장관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공식으로 인증한 사건 가운데 범죄수사, 기소 기간 중 지속적으로 체류하였고, 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도덕적인 품행을 유지하였으며,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심각한 위해를 포함하는 극도의 고통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었던 당시 18세였고, 미국에 입국할 자격요건을 갖추었거나 면제 받은 자이다.¹⁹²⁾

강제 추방이나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에게 미국에 남아 있어서 수사와 기소과정에 협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고는 있지만 실행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T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특히 고국에서 서류를 얻는 것, 충격적인 기억들을 증언으로 되살리는 것, 프로보노 변호사들과 협력, 높은 금액의 서류작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많다. 그리고 ‘중대한 위해를 포함하는 극도의 고통을 받게 될 위험’을 증명하지 못해서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 이민국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매년 5000명에게 T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쿼터아래 2011년에는 557개의 신청서들이 인정되고 223명이 거부당했다.¹⁹³⁾ 무엇보다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이 피해

191) 미국 시민권과 이민서비스(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웹사이트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재원내용에서 발췌.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02ed3e4d77d73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nextchannel=02ed3e4d77d73210VgnVCM100000082ca60aRCRD>

한국은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남아 있는 경우 취업할 수 없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고용 계약서를 받아서 출입국에 제출해야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경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 추후 취업허가가 주어 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 난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업이 어려울 것이다.

192) 8 USC §1255(i). 또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이들에게도 최상의 이익을 고려 하려 이들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정부기관과 협력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2 USC 7105(f)).

193) A. Kandasamy, U.S. visas help trafficking victims, if applicants can vault legal hurdles, San Francisco Public Press, News Report, Feb 22, 2012. <http://sfpublicpress.org/news/2012-02/us->

자의 인권과 법집행과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곧 인신매매 범죄의 성격상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손상을 입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 사법절차에 협조를 하지 못할 수 도 있는데 이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¹⁹⁴⁾ 현재 많은 국제 인신매매 전문가들은 사법절차에 협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사법절차에 협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도 피해자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 을 주장하고 있다.

라. 체류를 위한 기타 제도

T비자 이외에 다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로 고통 받아온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U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1994)’에 따라 결혼 또는 약혼기간 동안 미국 시민권 배우자나 약혼자가 잔혹한 폭력을 가하여 외국인과 외국인의 아동이 폭행을 당한 경우 ‘B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아동의 경우 학대, 방치 또는 유기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에 위탁보호와 함께 ‘특별 청소년 이민자(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고 난민에 해당할 경우 난민신청도 가능하다.¹⁹⁵⁾

visas-help-trafficking-victims-if-applicants-can-vault-legal-hurdles.

194) K. Cummings, The Trafficking In Victims Protection Act; A Feasibility Assessment, Journal of Race, Gender, and Ethnicity Vol. 2, Touro College Jacob D. Fuchsberg Law Center, 2008, 56면 이하.

195) G. Pendleton, Human Trafficking and the T-visa, Training material supported by the Violence Against Women Off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U.S. Department of Justice, 15면 이하. <http://www.vaw.umh.edu/documents/humantrafficking/humantrafficking.pdf>

4. 인신매매범죄 예방

가. 인신매매 모니터 및 근절 테스크 포스 (Interagency Task For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인신매매 모니터 및 근절 테스크 포스(Interagency Task For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는 인신매매범죄자 기소를 위한 노력 중에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공적 부패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테스크 포스는 국내외 인신매매 관련 연구와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 특히 매년 법무부 장관은 인신매매 기소 및 유죄판결 통계, 체류비자를 받은 피해자의 통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¹⁹⁶⁾

테스크 포스는 여성과 아동의 성착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관광’에 대한 조사도 행해야 한다. 또한 미연방 정부안에서부터 인신매매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미국연방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계약자와 그의 고용자 또는 미연방정부의 하도급업자와 그의 고용자가 인신매매 범죄, 상업적 성행위 알선, 채무노역을 포함한 강제노동에 관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¹⁹⁷⁾

테스크포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신매매모니터 및 근절을 위한 또 다른 기관을 국무부 안에 설치하게 했는데, 이 기관의 역할 중에도 미연방 시민이 중대한 인신매매의 피해자의 노동으로 제작된 생산품은 사용하지 않을 것과 성착취와 관련한 인신매매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어 강제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¹⁹⁸⁾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노동부를 통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사용에 대해 모니터하고 아동 노동으로 인해 생산된 제품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도록 하였다.¹⁹⁹⁾

196) 22 USC §7103(d).

197) 22 USC §7103(h),(I).

198) 22 USC §7103(e).

199) 22 USC §7112(b)(2)(c). 미연방 노동부가 발간한 2012년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리스트 (U.S. Department of Labor's List of Goods Produced by Child Labor or Forced Labor 2012) 참고 <http://www.dol.gov/ilab/programs/ocft/2012TVPRA.pdf>

나. 프로그램 및 자료개발

이외에도 인신매매피해가 우려되는 자를 대상으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해외에 인신매매의 위험성을 알리고 특히 목적국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큐멘터리나 방송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²⁰⁰⁾ 그리고 국경지대에서 지방 경찰이 인신매매범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절한 방식으로 돕기 위해 훈련을 받을 것과 피해자의 국외 이송을 막기 위해 신원을 확인 하는 등 국경지대차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²⁰¹⁾

국제 성관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관광이 불법이고, 범행 시에 기소될 것이며, 이에 연루된 자에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성관광 참여자에게 알리기 위해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였다.²⁰²⁾ 이 자료는 성관광의 목적지로 여행하는 개인에게 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에 미국 시민들이 연루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노력이 보이는 조치이다. 그리고 송출국의 정부를 지원하여 인신매매피해자가 강제노동을 포함한 착취를 당할 수 있는 모집 업체를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이주자의 언어로 그들의 권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정부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정보를 보급하도록 하였다.²⁰³⁾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도 위 정보가 담긴 “Know your rights”과 같은 팸플릿을 보급하고 있다.²⁰⁴⁾

또한 인신매매피해자의 피해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주, 인디언 부족, 지방 정부 단위, 비영리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²⁰⁵⁾ 피해자보

200) 22 USC §7104(b),(d).

201) 22 USC §7104(c).

202) 22 USC §7104(g).

203) 22 USC §7104(i). 안내 팸플릿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사용하도록 하였고 다음 네 가지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1) 고용의 이동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비 이민비자 신청절차, 2) 이민법, 근로법, 고용법에 따라 고용 및 고용에 관련한 비 이민비자 소지자의 법적 권리, 3) 미국내의 노예, 노역, 인신매매, 성폭행, 강탈, 협박, 근로자 착취 등의 불법행위, 4) 노동착취와 인신매매 피해자의 법적권리, 곧 이민과 노동권리 단체에 접근할 권리, 배상을 청구할 권리, 보복 없이 폭력에 대해 보고할 권리, 여권에 대한 권리, 고용계약의 요건 등, 4)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피해자를 대상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관들에 관한 정보-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핫라인, 구조와 복귀를 위한 핫라인, 피해의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204)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365면.

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활동에 대해 협박 또는 보복 당하는 것
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훈련을 위해서도 보조금을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²⁰⁶⁾

다. 보고서 제출 및 연구의 의무

해외로 파견되는 공무원이나 평화유지군과 관련하여, 국제연합(UN),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또는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기구를 통해 새로 파견되는
평화유지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 전에(최소15일) 국무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포함한 기타 해당 의회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²⁰⁷⁾ 보고서에는 해
당 기관 직원 및 평화유지군이 인신매매 행위, 피해자 착취, 성적 착취 또는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는
동안 그와 같은 행위에 관여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²⁰⁸⁾

그 밖에, 국내 및 국제인신매매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내용
은 인신매매의 경제적 원인과 결과,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
하기 위해 기관들에 의해 조달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인신매매와 보건위험(특히 HIV/AIDS) 간의 상호 관련성, 인신매매와 테러 행위간의
상호 관련성, 밀입국 및 인신매매 센터 내의 통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국가,
지역, 국제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수를 파악하기위한 메커니즘 구축 그리고 군인
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아동을 유괴 및 노예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신매매의 위협 등 인신매매와
관련된 포괄적인 주제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²⁰⁹⁾

205) 22 USC §7105(b)(2)(A).

206) 22 USC §7105(b)(2)(B).

207) 22 USC §7111.

208) 22 USC §7111(A)(B).

209) 22 USC §7109a(a)(1).

5. 국제협력

미국무부는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로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를 통해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최소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각 정부의 노력을 분석하고, 최소기준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²¹⁰⁾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명시된 최소기준을 보면 인신매매가 중범죄로써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인신매매척결을 위해 엄격한 처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¹¹⁾

- (1) 각국의 정부는 중범죄 인신매매를 금지해야 하며 이러한 인신매매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 (2)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행위가 무력, 사기, 강압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피해자가 동의가 불가능한 미성년자일 경우 또는 강간 또는 납치를 포함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각국의 정부는 강제 성폭행 등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처벌해야 한다.
- (3) 의도적인 중범죄 인신매매범죄 행위에 대해 각국의 정부는 충분히 엄격하고 범죄의 극악한 성격을 적합하게 반영하여 처벌해야 한다.
- (4) 각국의 정부는 중범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척도는 아래의 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²¹²⁾

210) 인신매매 보고서는 최소한의 기준 이행여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데, 1등급은 최소기준을 잘 이행하는 국가, 2등급은 최소기준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소기준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 3등급은 최소기준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준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211) 22 USC §7106(a).

212) 22 USC §7106(b).

- (1) 각국의 정부가 인신매매를 강력히 수사 및 기소하고, 이런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하는지의 여부.
- (2) 각국의 정부가 피해자가 보복 또는 어려움을 겪을 나라로 강제 출국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대안을 포함하여 인신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지원을 하는지의 여부,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인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부적절하게 감금되거나 벌금형에 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필요에 기초하여 피해자에게 응대하고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출입국 공무원에게 훈련을 제공했는지의 여부
- (3) 각국의 정부가 인신매매의 피해가 우려되는 자를 포함한 대중들에게 인신매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알리고 교육 하는지, 출생 신고, 시민권 및 국적을 포함한 자국민의 신원 파악하는지, 평화유지군 또는 기타 유사한 임무로 해외에 배치된 경우 이들이 중범죄 인신매매에 참여 또는 조장하지 않게 하는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강제 노동 또는 아동 노동을 사용하지 않게 하였는지의 여부
- (4) 각국의 정부가 인신매매의 수사 및 기소에 있어 다른 정부와 함께 협력하는지의 여부.
- (5) 각국의 정부가 인신매매행위로 기소된 자를 다른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유사하게 본국으로 인도하는지 여부, 또는 이런 송환조치가 해당 국가의 법이나 해당 국가가 서명한 국제 조약과 불일치하는 송환, 정부가 송환을 허가하도록 법이나 조약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
- (6) 각국의 정부가 인신매매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민 및 이주 패턴을 모니터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국가의 법 집행기관이 이러한 증거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과 자신의 나라 등 특정 국가로 떠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 권리의 보호뿐만 아니라 인신매매행위의 강력한 수사 및 기소로 응하는지의 여부.
- (7) 각국의 정부가 평화유지 또는 기타 유사한 임무의 일부로 해외에 배치된 자국민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에 참여 또는 조장하거나 인신매매피해자를 착취

- 하는 공무원을 강력히 수사, 기소, 유죄 입증, 및 처벌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인신매매를 묵과하는 공무원에 대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지의 여부.
- (8) 국가의 비시민권자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비율.
- (9) 각국의 정부가 정부의 능력에 따라 위의 최소기준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공개하는지에 대한 여부.
- (10) 전년도 평가에 비교했을 때 각국의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에 대해 분명한 진전이 있었는지의 여부.
- (11) 각국의 정부가 상업적 성행위 그리고 자국민의 성관행에 대한 수요를 감소 시키는데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는지의 여부²¹³⁾

이렇게 미국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여겨 인신매매를 척결하려는 위의 최소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비인도적(non-humanitarian)’, ‘비통상 관련(non-trade-related)’ 원조를 제재하는 정책을 두었다.²¹⁴⁾ 그리고 대통령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최소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을 할 때까지 비인도적, 비통상 관련 원조를 하지 않게 하고, 해당국가 공무원들의 교육 및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게 하며 다자간 개발은행 및 국제통화기금의 미국 대표들이 해당국가 기관의 자금대출 등에 반대투표를 하고 거부하도록 하였다.²¹⁵⁾

원조나 제재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협력할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는 취지이지만 이러한 외교정책에 대해 해당 국가와의 관계 및 다른 외교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하다.²¹⁶⁾ 그리

213) 22 USC §7107(4)(A)-(C). 위의 최소기준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국가가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의 근원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로서의 정도, 해당 국가의 최소기준 준수 여부와 정부관계자나 공무원들이 심각한 인신매매에 가담했거나 조장 또는 묵인하거나 심각한 인신매매 유형에 연루되어 있는 정도, 해당 정부의 자원과 그 역량에 비추어 최소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합리적인 조치 등을 고려한다.

214) 22 USC §7107(a).

215) 22 USC §7107(4)(d).

고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위선적’이며 ‘패권주의적’인 정책이라는 견해도 있다.²¹⁷⁾ IJM(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의 게리 호겐(Gary Haughen) 대표는 미국 스스로도 최소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고 있으며, 미국무부가 인신매매가 심각한 국가의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패스 그레이드(pass grade)를 주고 있어서 최소기준의 평가에 있어서 정확성과 공정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²¹⁸⁾

제3절 호주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1. 호주의 인신매매 상황 및 호주 연방정부의 대응

호주는 인신매매의 주요 정착국 중의 하나이며,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동유럽, 아프리카 등의 나라에서 호주로 일자리를 찾아온 이주 여성들이 강제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다. 여성들은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불법 약물에 의해 조정당하며 생각지도 못한 빚을 떠안게 된다. 또한 성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인도, 중국, 한국, 필리핀, 태평양 섬나라 등으로부터 남성과 여성들이 악덕 고용주 또는 모집업체를 통해 모집되어 농업, 원예, 건설, 청소, 제조업, 가사노동자, 서비스업 분야에서 여권을 압수당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²¹⁹⁾

1990년 호주의 법개정 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는 노예무역이나 타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에 대해 현시대에 맞는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법개정 위원회의 권고로 인해 1999년 ‘성적노역과 성적노역을 위한 사기적 고용’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하여 연방형법을 개정하였다.²²⁰⁾ 그 후 2005년 유엔 인

216) L. S. Wyler, Trafficking in Persons: International Dimensions and Foreign Policy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 17면 이하.

217) J. Chuang, The United States as Global Sheriff: Using Unilateral Sanctions to Combat Human Trafficking, 27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6, 458면.

218) K. Cummings, 앞의 논문, 57면.

219)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73면.

신매매의정서를 비준하고 의정서의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으로 2005년 형법을 재개정하고, ‘인신매매와 채무노역’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하였다.²²¹⁾ 사실상 ‘노예(slavery)’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조항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²²²⁾

호주는 미국과 필리핀과는 달리, 별도의 인신매매법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서 인신매매를 범죄화하고 처벌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이나 인신매매 예방 등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호주연방정부는 2003년 인신매매퇴치전략(a whole-of-government strategy to combat people trafficking)을 수립하여 예방, 파악과 조사, 형사기소 그리고 피해자 지원 및 복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인신매매 피해자보호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인신매매 범죄수사를 위해 특별 법집행 태스크포스(Special Law Enforcement Taskforce)를 조직하고,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부처 간 인신매매 위원회(Interdepartmental Trafficking Committee)를 조직하였다. 인신매매 범죄가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범죄인만큼 이민 국적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호주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호주연방검사(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와 가족, 주택, 지역사회서비스와 원주민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등 여러 부서에서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²²³⁾

220) 1926 International Convention to Suppress the Slave Trade and Slavery²⁸ and its 1953 Protocol, and the 1956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이 두 조약을 바탕으로 노예를 정의하였다.

221) Criminal Code Act 1995 (Cth), Criminal Code Amendment Act 2005. 참고로 인신매매 범죄는 연방형법에서 다루고 있지만, 각 주에서 인신매매와 연관된 다른 범죄, 예를 들어, 성매매, 폭행, 납치, 살인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222) A. Schloenhardt, J. Jolly, Trafficking in Persons: A Critical Appraisal of Criminal Offences in Australia,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TC Beirne School of Law Human Trafficking Working Group, 2011, 7면 이하.

223) 호주 법무부의 웹사이트, 인신매매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내용에서 발췌 (Australia's Response to People Trafficking) <http://www.ag.gov.au/CrimeAndCorruption/PeopleTrafficking/Pages/Australiaresponsepeopletrafficking.aspx>

2. 인신매매 개념정의 및 처벌

1999년과 2005년에 각각 개정된 인신매매 관련 형법은 270조와 271조이다. 270조는 ‘노예, 성적노역 그리고 성적노역을 위한 사기적 고용(Slavery, sexual servitude and deceptive recruitment into sexual services)’에 대한 조항이고, 271조는 ‘인신매매와 채무노역(Trafficking in persons and debt bondage)’에 관한 조항이다.²²⁴⁾

가. 형법 270조

270조에 따르면 ‘노예(slavery)’란 타인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거나 또는 계약을 맺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²²⁵⁾ 이 조항에 따르면 노예를 소유하는 자,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노예무역을 한 자는 2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²²⁶⁾ 그리고 노예와 관련하여 상업적 거래에 개입하거나, 이런 상업적 거래를 운영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자, 이러한 거래에 대해 부주위한 자는 1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²²⁷⁾

1) 법원의 판결

2008년 R v Tang 사건²²⁸⁾에서는 노예에 대해 더욱 확장된 정의를 내렸다. 피고는 멜번에서 합법적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폭력조직에 4만5천불의 빚을 지고 있었고, 피고는 2만 불을 주고 여성에 대해 70%의 소유권을 가

224) 노예와 노역의 차이점은 노예는 타인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상태인 반면, 노역은 소유권 행사까지는 아니지만 타인에 대한 지배력 행사로 인해 타인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상태이다.

225) Sec 270.1, Criminal Code (Cth), MCCOC(Model Criminal Code Officers Committee)는 현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노예형태에 맞추어 정의를 더욱 확장하여 채무발생이나 착취적인 계약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226) Sec 270.3 (1), Criminal Code (Cth).

227) Sec 270.3 (2), Criminal Code (Cth).

228) R v Wei Tang (2007) 16 VR 454 (첫 번째 항소, 빅토리아주 고등법원). 피고는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고 있었다. 손님 한 명당 110불을 내면 피고와 폭력조직이 이익을 나누어 가진 후 50불은 여성의 몫이 되었다. 여성들은 영어를 할 수 없었고, 불법으로 비자를 획득하여 입국하였기 때문에 이민성의 단속을 두려워 했고, 4~6개월 만에 900명 가량의 손님을 받아서 2명의 여성이 빚을 다 갚았지만 계속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적인 폭력이나 위협은 없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타인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인의 노동에 아무런 제한 없이 상당한 권력을 사용하는 것,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얻는 것, 타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배하는 것, 타인을 사고 팔 권리는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²²⁹⁾ 그리고 이 사건에서 여성을 상대로 신체적인 폭력이나 위협을 없었지만, 법원은 노예의 범죄성립을 위해 물리적인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더욱 교묘한 형태로 지배력과 소유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²³⁰⁾

R v Kovacs 사건²³¹⁾에서는 R v Tang 에서 정의한 확장된 노예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위장결혼으로 호주에 들어온 필리핀 여성은 피고 부부의 집과 가게에서 노예와 같은 조건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되었다.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매일 장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R v Tang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감금되어 있거나 신체적 폭력을 당하지는 않았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강제로 붙잡혀 오거나 여권을 압수당했지만, 출입이 자유로웠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의사소통도 가능하였다. 비록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송금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non-exist or largely illusory)과 마찬가지로 판결하였고,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 영어를 할 수 없는 것과 호주에 아는 사람이 없는 점, 그리고 집과 가게가 외딴 곳에 있었던 점을 언급하여 피해자가 더욱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지적하였다.²³²⁾

229) R v Tang (2008) 237 CLR 1 (두 번째 항소, 호주대법원).

230) R v Tang (2008) 237 CLR 1 (두 번째 항소, 호주대법원); A. Schloenhardt, J. Jolly, 앞의 논문, 20면.

231) R v Kovacs [2009] 2 Qd R 51.

232) R v Kovacs [2009] 2 Qd R 51; A. Schloenhardt, J. Jolly, 앞의 논문, 21면 이하.

2) '성적 노역(sexual servitude)'의 포섭

이 조항은 '성적 노역'의 개념표지도 포섭하고 있다. '성적노역'이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무력이나 위협으로 인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거나,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²³³⁾ 여기서 위협이란, 성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강제추방이나 해로운 행동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말한다.²³⁴⁾

타인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또는 미필적 고의로(reckless) 성적 노역을 하게 하는 자는 성적 노역 범죄에 해당하여 15년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하였다.²³⁵⁾ 그리고 성적 노역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 알고 있거나 미필적 고의를 가진 자도 15년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사업을 계획하는 자, 업주, 자금을 조달하는 자를 겨냥한 조항이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20년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하였다.²³⁶⁾

2008년 *Seiders v R*, *Somsri v R* 사건²³⁷⁾에서 피고는 4명의 태국 여성들을 성적 노역상태로 성적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여성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4만 5천불의 빚을 지고 있었다. 피고들은 여성들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왔고, 자진해서 빚을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성들이 비록 여러 가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신체적인 폭력이나 위협은 없었지만, 여권을 압수당하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피고에게 의존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여전히 성적서비스를 그만두거나 업소를 자유롭게 떠날 수 없었다면 이것은 성적노역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²³⁸⁾ 이러한 판결 역시 전통적인 노예의 개념을 더욱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강제결혼(forced marriage)이나 노예적 결혼(servile marriage)에서 발생

233) Sec 270.4 (1), Criminal Code (Cth).

234) Sec 270.4 (2), Criminal Code (Cth).

235) Sec 270.6, Criminal Code (Cth).

236) Sec 270.8, Criminal Code (Cth); 성적 노역 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부과하고 있는 반면 노예 범죄는 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점이 지적된다.

237) *Sieders v R*; *Somsri v R* (2008) 72 NSWLR 417.

238) A. Schloenhardt, J. Jolly, 앞의 논문, 24면.

할 수 있는 비상업적인 성적 착취(non-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성적노역을 위한 사기적 고용’도 이 조항 아래 처벌받을 수 있다. 의도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유인한 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타인을 속였을 때 이에 해당한다. 성적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 제공될 성적서비스의 성격,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재량의 정도, 성적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날 수 있는 재량의 정도, 채무가 있을지의 여부, 그리고 착취, 채무 노역 또는 여권이나 신분증 압수 등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속이면 이에 해당하고, 7년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하였다. 이 범죄 역시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가중처벌로 인해 9년까지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²³⁹⁾

3) ‘강제노동’ 개념표지의 부재

270조에서 아쉬운 점은 이 조항이 성적 노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범죄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R v Tang 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강제노동은 노예 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의해 많이 처벌되어 왔다.²⁴⁰⁾

나. 형법 271조

형법 271조의 ‘인신매매와 채무노역(Trafficking in persons and debt bondage)’에 관한 조항에서는 ‘착취’를 착취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노예, 강제노동 또는 성적 노역을 하게 된 경우 또는 착취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장기가 적출된 경우라고 정의하였다.²⁴¹⁾ 여기서 ‘강제노동’은 무력이나 위협으로 인해 노동이나 서

239) Sec 270.7, Criminal Code (Cth).

240) F. Simmons, Strengthening Australia's Response to Human Trafficking, Report to the Australian Women's Coalition, Anti-Slavery Project,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2010, 19면.

241) Item 11, Criminal Code Amendment Bill 2004 (Cth). 착취에 대한 위 정의는 인신매매 의정서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지만, 의정서에 정의된 착취유형보다 좁은 의미에서 착취를 규정하고 있다.

비스를 제공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해 노동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중단할 수 없고,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을 경우를 말한다.²⁴²⁾ 강제노동에서 ‘위협’은 무력을 동반한 위협 또는 강제추방이나 해로운 행동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이라고 정의했는데, 구체적으로 ‘강제추방의 위협’을 정의에 포함시킨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 형법 272조

형법 272조는 앞의 인신매매 조항들과 별도로 호주 밖에서 일어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호주 밖에 있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한 자는 20년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하였다.²⁴³⁾ 그리고 아동이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아동을 보호하거나 아동을 상대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아 25년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하였다.²⁴⁴⁾ 또한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3번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2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²⁴⁵⁾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미래에 성행위를 하도록 아동을 설득(grooming)한다면 이 또한 처벌 받을 수 있다.²⁴⁶⁾

또한, 위의 범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와 범죄를 조장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다.²⁴⁷⁾ 이 조항은 특히 여행사를 포함하여 성관광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뿐만 아니라, 여행가이드 그리고 꼭 이익을 받지 않아도 인터넷 등에서 아동 성관광에 대

특히 이에 대해 호주의 상원 입법 위원회(Senate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Legislation Committee)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결혼, 노예적인 결혼 등에 대한 비상업적인 성적 착취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서는 Legal and Constitutional Committee, Senate,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Bill 2004, 2005, 14면.

242) Sec 73.2(3), Criminal Code (Cth).

243) Sec 272.8, Criminal Code (Cth).

244) Sec 272.10 Criminal Code (Cth).

245) Sec 272.11, Criminal Code (Cth).

246) Sec 272.15, Criminal Code (Cth).

247) Sec 272.18-19, Criminal Code (Cth).

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다.²⁴⁸⁾ 그리고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성관광을 계획한 자, 곧 성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²⁴⁹⁾ 비록 필리핀과 미국과 같이 아동 성관광을 인신매매에 연관된 범죄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 성관광에 대한 조항을 연방형법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마련하였고, 법적 책임을 확대하여 미수범이나 여행사, 가이드,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라. 평가

호주형법 270조와 271조 두 조항 모두 인신매매를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270조는 피해자가 착취당하는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271조는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곧 인신매매가 착취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면, 노예와 강제노동은 착취를 당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형법 270조는 인신매매로 인해 발생한 착취가 아닌 경우 또는 착취는 증명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이동시킨 인신매매 행위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호주형법 271조에 의하면 호주의 인신매매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은 4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무력 또는 위협을 가해서 타인의 이동 - 호주로 입국, 인수 또는 입국계획, 출국 또는 출국계획 - 을 도모하거나 알선하여 타인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 둘째, 이동을 도모하거나 알선하는 자가 타인의 착취여부에 대해 부주의한 경우 (또는 미필적 고의), 셋째, 타인의 이동이 성적서비스나 착취, 부채노역, 여행서류 내지 신분증 압수를 수반한다는 사실에 대해 속일 경우, 넷째, 이동을 도모하거나 알선하는 자가 호주에서 성적노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알선되어 있다는 것, 제공될 성적 서비스의 성격,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재량의 정도, 성적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재량의

248) J. McNicol, A. Schloenhardt, Australia's Child Sex Tourism Offences,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TC Beirne School of Law Human Trafficking Working Group, 2011, 11면.

249) Sec 272.20, Criminal Code (Cth).

정도,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날 수 있는 재량의 정도, 채무가 있을지의 여부, 그리고 착취, 채무노역 또는 여권이나 신분증의 압수 등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속일 경우이다.²⁵⁰⁾ 위의 네 번째 경우는 ‘성적 노역의 사기적 고용’ 조항과 같은 인신매매 조항과 같은데 인신매매의 행위로서 ‘이동’의 요소만 더 추가되었다. 곧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무력, 위협,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 예로, R v Dobie 사건에서 법원은 2명의 태국 여성을 속여 자신의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시킬 목적으로 데리고 와서 사기적 고용을 하려고 한 것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유죄선고를 내렸다.²⁵¹⁾

이와 같이 사기적 고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일어나고 성적노역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포섭하려고 한 조항은 주목할 만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다. 인신매매 의정서와 비교했을 때 호주 형법은 행위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수단에 있어서도 무력, 위협, 사기 또는 속임수는 포함시켰으나, 상대방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 등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단만큼 다양하지 못하다.

반면, 타인의 착취 여부에 대해 부주의한 경우(미필적 고의)에도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하는데, 의도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 조항은 의정서 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⁵²⁾ 그리고 부채노역, 신분증 압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착취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 더욱 자세한 규정을 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그 범위가 노동 착취를 포함하지 못하고 성적 착취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²⁵³⁾

250) Sec 271.2, Criminal Code (Cth).

251) R v Dobie (2009) 236 FLR 455. 여성들은 자신이 성적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약속과는 달리 쉬지 못하고 장시간 일해야 했으며, 약속한 금액의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감금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언어와 문화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하였다.

252) A. Schloenhardt, J. Jolly, 앞의 논문, 39면.

253) 그 밖에 채무노역도 별도 조항으로 범죄화 하고 있다. 채무노역 조항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채무노역을 하도록 의도한 경우 또는 그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1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Sec 271.8(1), Criminal Code (Cth)). 그리고 채무노역을 유도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였는데, 피해자와의 경제적 관계, 서면 내지 구두로 약정한 계약 또는 합의의 내용, 피해자가 호주에 체류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영어 또는 유인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언어

그 밖에 위 두 조항과 관련하여 호주 인신매매 규정에는 미수(attempt), 공범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과²⁵⁴⁾ 인신매매범죄의 형량이 12년으로 갈취(blackmail)등의 범죄와 같은 형량이기 때문에 인신매매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²⁵⁵⁾

마. 2012년 연방형법 개정안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2)

인신매매 의정서를 반영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신매매 관련 형법조항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2012년 5월 30일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고, 하원에서는 8월 22일 개정안을 통과시켜 현재 상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개정안은 강제노동, 강제 결혼, 피해자 은닉 그리고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 하였고, 성적 노역과 사기적 고용에 대한 조항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 이라는 문구 대신에,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적 고용을 포함하여 이전의 성적노역에 대한 조항을 ‘노예와 같은 상태(slavery-like condition)’ 라는 조항으로 대체하였다. 이 조항은 기존의 ‘성적 노역’범죄를 ‘노역(servitude)’범죄로 개정하고, 그 내용 중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태’에서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태’로 개정하여 성적 착취뿐만 아니라 노동착취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하였다.²⁵⁶⁾ 수단에 있어서는 이전의 ‘무력이나 위협’에서 ‘강압, 위협 그리고 속임’으로 개정하고, ‘강압(coercion)’의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강압을 무력, 협박, 감금, 정신적 압박, 권력남용,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것으로 정의하여 인신매매 의정서의

를 말하고 쓰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사회적 신체적 의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Sec 271.8(2), Criminal Code (Cth)).

254) 인신매매 의정서 제5조 제2항에 보면, 범죄행위의 미수, 공범, 범죄를 계획/조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것도 인신매매 처벌행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55) A. Schloenhardt, J. Jolly, 앞의 논문, 50면.

256) Sec 270.4(1),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수단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였다.²⁵⁷⁾ 그리고 피해자가 탈출이 가능한 상황에 있었거나 탈출을 시도하려 한 사실과 관계없이 ‘노역’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²⁵⁸⁾ ‘성적노역을 위한 사기적 고용’ 범죄에서도 역시 ‘노동이나 서비스를 위한 사기적 고용’으로 개정하였다.²⁵⁹⁾

둘째, 성산업 이외의 분야에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강제노동에 대한 조항을 별도의 범죄조항으로 신설하였다. 기존의 강제노동 정의에 ‘강압’을 더 추가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노역’에 대한 조항과 같이 피해자가 탈출이 가능한 상황에 있었거나 탈출을 시도하려 한 사실과 관계없이 강제노동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²⁶⁰⁾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강제노동을 하게 한 행위나 강제노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도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도록 하였다.²⁶¹⁾ 현재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부재한 상태이다.

셋째, 강제결혼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신설되었다. 강제결혼이란 강압, 협박, 속임에 의해 결혼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완전히 동의하지 않은 결혼이라고 정의했다. 이 조항은 동의하에 결혼은 했지만 결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성착취나 노동착취와 같은 ‘노예와 같은 상태’, 소위 ‘노예적 결혼(servile marriage)’을 포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상원 입법 위원회는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노예 또는 노역(servitude)’죄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²⁶²⁾

257) Sec 270.1 A,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258) Sec 270.4(3),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259) Sec 270.7,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260) Sec 270.6,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261) 270.6A,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262) Legal and Constitutional Committee, Senate, Criminal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넷째,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은 범죄성립에 있어 방어로 작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²⁶³⁾ 그밖에 호주형법 271조(인신매매)의 착취의 개념이 확장되어 270조에서 언급된 노예, 노예와 비슷한 상태, 노역, 강제노동, 강제결혼, 채무 노역을 모두 포함하였고, 이것을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경우 처벌받도록 하였다.²⁶⁴⁾ 그리고 장기적출과 인신매매 행위에 있어서 피해자를 은닉하는 행위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여 피해자를 은닉, 인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²⁶⁵⁾

3. 피해자 보호 및 인신매매 범죄예방 프로그램

호주 연방정부는 인신매매퇴치전략(a whole-of-government strategy to combat people trafficking)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프로그램(The Support for Trafficked People Program'-STPP')을 시작하였고, 특히 2009년부터는 호주 적십자(Red Cross)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²⁶⁶⁾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인데, 피해자의 단기 및 장기 지원과 호주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과 함께 형사사법절차를 돕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호주의 인신매매 관련 NGO와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인신매매 의정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처벌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16면 이하. '노역(servitude)'은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결혼을 포함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노예와 같은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263) Sec 270.11,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264) Sec 271.1A,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265) Sec 271.7A-271.7E, 271.7F-7G,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266) Australian Red Cross Submission to 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Inquiry into the Exploitation of Women through Trafficking, Australian Red Cross, 2012, 2면. 최근에는 2015년까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 http://www.redcross.org.au/files/Submission_NSW_Inquiry_into_the_exploitation_of_women_through_trafficking.pdf

하지 못했던 인신매매법에 대해 기소가 가능하게 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였지만, 피해자 보호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곧 인신매매를 단지 형사사법체제에서 법집행의 문제로만 다루어 범죄자 기소에만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즉, 형사사법절차에 협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이런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자가 중심이 되지 않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²⁶⁷⁾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의 체류보호

인신매매 피해자는 출입국, 경찰, NGO, 병원, 영사관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발견되지만, 피해자가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호주연방경찰이 결정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수사협조 여부와는 상관없이 45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호주에 남아 있을지 선택할 수 있고, 45일 간 체류할 수 있으며 필요시 45일 추가연장이 가능하다.²⁶⁸⁾ 일할 수 없지만, 체류 자격이 없는 피해자들은 필요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한 숙소와 생계비가 지원되며, 상담, 의료서비스, 통역 및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²⁶⁹⁾

피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남아서 소송을 할지 결정이 되면 형사사법절차에 협조하는 피해자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취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주거비와 생계비가 지원되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구나 주거용품 구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의료보험, 법률지원, 통역, 직업교육, 영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267) J. Burn, ‘호주의 인신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인권 보호 및 피해자 지원’ 발표문,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자료집, 2010.6.28., 129면.

268) 학생비자 등 이미 체류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비자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 Bridging Visa F도 신청가능하다. 45일 동안의 추가연장은 수사나 기소에 협조할 의사는 있지만 건강상태로 인해 협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가능하다.

269) Australian Red Cross Submission to 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Inquiry into the Exploitation of Women through Trafficking, Australian Red Cross, 2012, 4면.

호주 밖에 있는 경우 인신매매 범죄자 기소를 위해 호주에 다시 입국하여 임시로 체류할 수 있으며 다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로 체류할 수 있는 숙소와 생계비가 지원된다.²⁷⁰⁾ 하지만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지면서 이 기간에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결합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것이 지적되기도 하였다.²⁷¹⁾ 2009년부터 적십자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12명이다.²⁷²⁾

그리고 경찰 수사나 형사사법절차에 협조한 피해자나 본국으로 귀국하면 위협에 처할 수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양가족은 증인보호비자(Witness Protection Visa)라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12년 미국부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48명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증인보호비자를 발급하였다.²⁷³⁾ 마찬가지로 증인보호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실하지 않음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길어지는 소송과정에서 증인보호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불안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호주의 Anti-Slaver Project (현 Anti-Slave Australia)에서는 수사에 협조하는 피해자에게는 Criminal Justice Stay 비자를 받은 후 최소한의 시기(약 3달 정도)가 지나면 이민성에서는 피해자가 증인보호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고려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방경찰이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Criminal Justice Stay 비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시기에 상관없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증인보호비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²⁷⁴⁾

나. 피해자 지원제도

호주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에게 취업과 교육의 기회가

270) 앞의 제안서, 4면.

271) Legal and Constitutional Committee, Senate, Criminal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30면 이하.

272) Australian Red Cross Submission to 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Inquiry into the Exploitation of Women through Trafficking, Australian Red Cross, 2012, 5면.

27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74면.

274) F. Simmons, 앞의 논문, 23면.

주어지고,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으며, 개인의 사례관리를 하는 사회복지가가 배정되어 주거공간을 찾는 것을 지원하는 것부터 개인에 맞추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 적십자는 이러한 지원이 각 주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는 점과 가족결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 시민단체에서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한 점, 그리고 형사사법절차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원 등을 지적하였다.²⁷⁵⁾

다.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지원

그 밖에 2008년 호주인권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인신매매에 대한 라운드테이블(National Roundtable on People Trafficking)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법적 권한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 이러한 정보를 담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Know Your Right’이라는 팸플렛과 NGO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²⁷⁶⁾ 성관광 예방을 위해서도 팸플렛(“Travel Smart: Hints for Australian Travelers”)을 제작하여 인신매매 범죄와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어떻게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범죄를 목격한 경우 어떻게 연방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아 여행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라. 평가

이와 같은 피해자 보호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형사사법절차를 조건으로 하는 피해자 지원에 대해 상원 입법 위원회(Senate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Legislation Committee)는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에 대해 수사

275) Australian Red Cross Submission to 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Inquiry into the Exploitation of Women through Trafficking, Australian Red Cross, 2012, 7면 이하.

276) F. Simmons, 앞의 논문, 24면. 팸플렛은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NGO 가이드라인은 2009년 3월 호주인권위와 Anti Slavery Project (현 ‘Anti-Slavery Australia’)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나 사법절차 협조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자격과 피해자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기소가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아예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호를 받고 임시 및 영구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²⁷⁷⁾ UN 특별보고관인 Joy Ngozi Ezeilo 역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조건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2012년 호주의 인신매매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언급하였다.²⁷⁸⁾

둘째, 2012년 연방형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배상명령에 대한 조항에 ‘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받은 손해’를 삭제하고 ‘범죄의 이유로 발행한 모든 손해 또는 비용’이라고 개정하였다.²⁷⁹⁾ 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포함되지 않고, 인신매매범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²⁸⁰⁾ 그리고 현재 각 주마다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상원 입법 위원회에서도 연방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해 더 조사할 것을 권고하였다.²⁸¹⁾

제4절 소결

필리핀은 인신매매 의정서를 거의 대부분 반영하여 국가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행위와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세하게 규정하였고,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 범죄

277) Legal and Constitutional Committee, Senate, Criminal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35면 이하.

278) Australian Red Cross Submission to 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Inquiry into the Exploitation of Women through Trafficking, Australian Red Cross, 2012, 7면.

279) Para. 21B(1)(d),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280) Legal and Constitutional Committee, Senate, Criminal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24면 이하.

281) Legal and Constitutional Committee, Senate, Criminal Legislation Amendment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 Bill 2012, 26면 이하. 법무부는 연방손해배상 제도가 확실한 재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고 했고,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손해는 민사손해배상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예방을 위해 여러 정부 부처들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호주는 비록 인신매매 방지법이 따로 없지만, 연방형법 개정을 통해 계속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그리고 강제 결혼 및 노예적 결혼을 범죄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더욱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방 손해배상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현장을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 역시 오래전부터 인신매매 범죄 기소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의 정의는 사실 국제기준을 완전히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형법을 넓게 해석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아동 노동으로 인해 생산된 제품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위의 세 국가의 인신매매 관련 법들은 인신매매 범죄의 행위, 수단 목적에 있어서 인신매매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는 인신매매 의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관광의 경우 인신매매에 연관된 범죄로 법적 책임을 확대하여 중대한 범죄로 이와 연루된 자들도 모두 처벌하고 있다. 곧, 인신매매자는 아니지만 착취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한 자와 이를 조장 또는 계획한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 국가 모두 피해자를 비범죄화 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의 종착국인 호주와 미국의 경우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세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법집행부나, 시민들 사이에서 아직 인신매매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정부관계자들의 부패, 초국가적인 범죄로 인한 기소의 어려움,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인신매매 범죄자나 업체가 연루되어 있는 점,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인신매매법들의 협박, 보복 및 체류자격 등으로 인해 피해자 파악과 식별이 더욱 어려운 점 그리고 피해자보호 프로그램을 위해 실제로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인신매매법의 이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의 국제기준을 반영하는 인신매매법 제정과 함께 효과적인 인신매매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모

두 큰 효과가 있었다.

현재도 각 국가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위의 세 국가 모두 인신매매 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것과 이에 따라 범죄의 대한 피해자에게는 마땅한 지원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각 정부마다 활발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가 이전보다 많이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가 점차 구축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에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위의 입법사례들이 우리나라에 맞는 완벽한 모델이거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든지 간에 형식적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만을 위해서가 아닌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현재 현행법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인신매매 상황에 대해 솔직히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4장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안) 검토

최 민 영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안) 검토

제1절 인신매매 처벌규정

현행 형법과 특별법에서 직접 ‘인신매매’를 다루고 있는 규정은 거의 없지만, 인신매매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⁸²⁾

표 4-1 현행법상 인신매매 관련규정

법률	법조 및 죄명	구성요건	처벌	비고
형법	아동학사 (274)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행위. 인도받은 행위도 마찬가지임.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287)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 매매 등(288)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 미수범(294) · 상습범(288 ③): 2년 이상의 징역

282) 현행법상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동법 제2조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률	법조 및 죄명	구성요건	처벌	비고
			벌금의 병과(미수범 포함)	· 친고죄(미수범 포함): 고소기간-6개월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병과(미수범 포함)	· 미수범(294) · 상습범(288 ③): 2년 이상의 징역 · 미수범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289)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292)	①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병과(미수범 포함)	· 미수범(294) · 상습범(293 ②):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친고죄(미수범 포함): 고소기간-6개월
		②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 미수범(294) · 상습범 (293②):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습범 (293②)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제287조부터 제289조 그리고 제 292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상습으로 수수 또는 은닉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병과(미수범 포함)	· 미수범(294) · 친고죄(미수범 포함): 고소기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5조의2)	④ 「형법」 제 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습범(5조의 2 ⑤): 1/2까지 가중 · 미수범(⑥) · 예비·음모 처벌(⑧):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⑦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⑧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벌칙 (18③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수범(23) ·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범한 경우 가중 (18④, 2):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칙 (19① 1.)	성매매알선 등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 징역과 벌금 병과가능(23)

제4장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안) 검토

법률	법조 및 죄명	구성요건	처벌	비고
	벌칙 (19①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 징역과 벌금 병과가능(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매매 행위 (9①)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미수범(9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10)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②항 미수범(11④)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²⁸³⁾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아동매매 (71①, 17 1.)	만 18세 미만의 아동매매(아청법 제9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73) · 상습범(72): 1/2까지 가중
형법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 (291)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결혼중개업 의 관리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12조의2, 26② 9.)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²⁸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업 안정법	벌칙 (46①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46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벌칙 (42①)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42②)

위와 같이 현행법들은 주로 성매매와 결혼 목적의 인신매매를 중심으로 (아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처벌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의 처벌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1. 형법상의 인신매매 관련 처벌규정

가. 약취·유인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인신매매와 관련된 형법상의 규정은 약취·유인죄 규정이다. 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약취 혹은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만,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약취와 유인의 죄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약취 및 유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자유와 함께 보호자의 감독권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인정된다.²⁸⁵⁾

나. 약취·유인죄의 구성요건 체계

형법은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구성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죄가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된다.

283)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284) 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4.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

285) 김일수/서보하, 형법각론, 2007, 143면 이하; 배종대, 형법각론, 2011, 225면 이하; 이재상, 형법각론, 2012, 131면 이하; 이정원, 형법각론, 2012, 180면 이하;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2011, 146면 이하; 대판 1982.4.27., 82도186; 대판 2003.2.11., 2002도7115.

다음으로, 영리·추행·간음목적의 약취 및 유인죄(제288조 제1항), 부녀매매죄(제288조 제2항), 국외이송목적약취 및 유인죄(제289조 제1항)가 목적범으로서 목적으로 인해 행위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된다. 반면에 결혼목적의 약취 및 유인죄(제291조)는 목적으로 인해 불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마지막으로, 독자적 변형구성요건으로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가 있고, 약취·유인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제295조의2)을 마련하고 있다.²⁸⁶⁾

다. 목적범으로서 약취·유인죄

형법은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영리·추행·간음목적의 약취 및 유인죄(제288조 제1항), 부녀매매죄(제288조 제2항), 국외이송목적약취 및 유인죄(제289조 제1항), 결혼목적의 약취 및 유인죄(제291조)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영리·추행·간음목적의 약취 및 유인죄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추행의 목적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 간음의 목적은 결혼이 아닌 성교의 목적을 말한다. 다음으로, 형법은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처벌한다. 동 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어 남자는 동 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또한, 동 죄는 매매행위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매매는 ‘부녀의 신체를 유상으로 물건과 같이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덧붙여서 동죄는 ‘추업에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추업에 사용할 목적이란 창기 또는 매음 등의 업무에 종사케 할 목적을 말하며, 노동의 목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²⁸⁷⁾ 다음으로, 국외이송목적 약취 및 유인죄에서는 ‘국외에 이송할 목적’을 필요로 한다. 형법의 명문규정이 ‘국외에 이송할’

286) 심재무, 약취·유인죄의 정비방안, 형사법 연구 제22호 특집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 718면 이하.

287) 판례는 부녀매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 위협 등의 협박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판 1992.1.21.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 죄는 대한민국 영역 외로 이송할 목적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혹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송할 목적인 때에는 동 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결혼목적의 약취 및 유인죄에서 결혼은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한다는 해석이 다수를 이룬다.

라. 인신매매 처벌규정으로서 약취·유인죄의 한계

위에서 언급한 약취 및 유인죄 규정들은 ‘약취’, ‘유인’, ‘매매’ 등의 개념표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판례는 위 세 가지 개념표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를 요건으로 할 것을 명시한다. 즉, 약취·유인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를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하에 두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존재하는 한 범죄성립을 배척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²⁸⁸⁾ 결국, 약취·유인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감금장치에 의한 감금 등과 같이 심각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약취·유인죄 성립이 어렵게 된다. 실제로 동 범죄 규정들이 현실에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문 편이다. 실제로 아래의 표들은 약취·유인죄가 적용된 판결이나 기소률이 극히 적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성취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경우에 인신매매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위력사용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직업소개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자발성을 유도해 내는 현대적인 인신매매는 범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지배력의 행사는 적지만, 채무관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점차적으로 ‘노예적 지위’에 처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²⁸⁹⁾

288) 서울고등법원 2002.4.12., 2001노3042; 서울고등법원 1998.7.8., 98노1107; 소라미, ‘한국의 인신매매 처벌 관련 법제의 실태 및 형사법적 대응방안’ 발표문, 인신매매 방지와 성산업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국회인권포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2012.11.9., 69면; 김은경, 성취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91면 이하.

289) 이러한 점에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개념에 정신적 강박과 심리적 지배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김은경, 앞의 보고서, 192면.

표 4-2 약취·유인죄 판결현황 (2011)

(단위: 명)

구분 죄명			접 수	처리														소 년 부 송 치	기 타
				합 계	판결														
					생명형 (항소심, 상고심 경우: 사형)	자유형			자 격 형	재 산 형	선 고 유 예	무 죄	형 의 면 제	면 소	관 할 위 반	공 소 기 각			
						무 기	유 기	집 행 유 예											
약취와 유인의 죄	제1심	41	38	—	—	12	18	—	2	2	—	—	—	—	—	—	4		
	항 소 심	고 등	7	8	—	—	2	1	—	—	—	2	—	—	—	—	—		
		지 방	8	10	—	—	1	2	—	1	—	—	—	—	—	—	—		
	상고심	12	9	—	—	—	—	—	—	—	—	—	—	×	—	×	3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약취· 유인죄	제1심	59	56	—	—	36	15	—	—	—	2	—	—	—	1	2	—		
	항 소 심	고 등	43	37	—	—	5	—	—	—	2	—	—	×	—	—	—		
		상고심	20	15	—	—	—	—	—	—	—	—	—	—	×	—	×	3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

표 4-3 약취·유인죄 관련 기소현황

(단위: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71 (58)	33 (24)	36 (26)	33 (26)	55 (44)	78 (44)	59 (38)	66 (34)
영리약취· 유인	66 (54)	31 (24)	34 (24)	32 (26)	55 (44)	78 (44)	59 (38)	63 (34)
부녀매매	5(4)	2	2(2)	1	0	0	0	3(0)
국외이송· 약취	0	0	0	0	0	0	0	0

※ 산출죄명: 영리등을 위한 약취등, 부녀매매, 국외이송약취,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영리약취, 영리유인,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위반

()는 구속기소

출처: 법무부, 2012 법무연감.

2. 성매매처벌법상의 인신매매 처벌규정

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처벌규정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를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3) 1)과 2)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1)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4) 1)2)3)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이어서 동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지배·관리” 간주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개념규정 하에서는 피해자가 비장애 성인인 경우에 인신매매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1) 성매매 목적의 존재, 2)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할 것, 3) 제3자에게 인계할 것의 구성요건이 요구된다. 동 범죄 역시 목적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매매 목적이 현실적으로 성취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성매매 목적만 있으면 동 범죄는 성립한다.²⁹⁰⁾

290) 소라미, 앞의 발표문, 70면 이하.

나. 인신매매 처벌규정으로서 동법의 한계

아래에서는 연예홍행 비자(E-6)를 통해 성산업에 유입되는 이주 여성들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는 동법의 한계를 간략히 논하기로 한다. E-6 비자를 통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범죄로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인신매매 범죄유형에 속한다.

우선, 필리핀에서 1) 한국인 기획사가 필리핀 현지 기획사와 연계하여 가수로 일할 필리핀 여성을 모집한다. 2) 기획사는 필리핀 여성을 상대로 노래를 심사한다. 3) 기획사는 노래심사 이후에 선발된 필리핀 여성의 영상물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연허가를 받는다. 4) 공연허가를 받은 이후에 E-6 비자발급을 신청한다. 5) 해당 필리핀 여성은 필리핀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은 이후, 비자를 발급받는다. 6) 비자를 발급받은 해당 여성은 한국에 입국한다. 한국에 도착한 여성은 7) 한국인 기획사를 통해 클럽업주에게 인계된다. 8) 기획사는 해당 여성의 여권을 압수한다. 9) 해당 여성은 매상할당제, 벌금제도,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추방시키겠다는 협박을 받는다. 10) 이러한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여성은 가수가 아니라 손님을 상대로 유흥접객, 유사성행위,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강요받는다.

이렇게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범죄구조는 범죄행위의 입증을 어렵게 한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고, 위계·위력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매매’ 목적과 ‘위계, 위력’의 수단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선, 성매매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현지에서 여성을 모집할 당시에 성매매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내심의 의사인 ‘목적’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기획사가 위계·위력 등의 수단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사는 현지에서 모집행위는 필리핀 측 기획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필리핀 기획사에서 선발한 여성을 확인할 뿐이라고 한다. 또한, 기획사는 필리핀 여성들이 이미 한국에서 할 일이 유흥접객, 성매매임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사 측의 위계·위력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인계해야 인신매매 범죄가 성립한다. 위 사례에서 필리핀 여성이 클럽에 도착한 날, 해당 기획사가 동 여성의 여권을 압수했기 때문에 지배·관리 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경우에 여권이 자발적으로 제공되었다는 명목하에 지배·관리 규정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2항의 지배관리 간주규정은 자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은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동 조항을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반한다.²⁹¹⁾

3. 인신매매 처벌의 어려움

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에 의하면 실제로 형법상의 약취·유인죄나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가 적발되어 처벌된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한다. 외국인여성지원시설인 “두레방”에서도 이 두 가지 법률 아래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보고한다.²⁹²⁾ 형사 고소된 필리핀 여성 피해 사건 15개 중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로 처벌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고, 해당업주만 단순히 ‘성매매 알선’으로 기소되어 경미한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다.

해외로 보내진 성매매 피해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여권 위조만 처벌을 하고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되지 않아서 이런 관행이 해외 성매매 규모를 갈수록 키우고 있다.²⁹³⁾ 인신매매 성격을 가지는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결혼중개업체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경미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에 그치고 있다.²⁹⁴⁾

291) 소라미, 앞의 발표문, 72면 이하.

292) 2012년 9월 3일 공익법 센터 ‘어필’의 어진이, 진유선 변호사가 ‘두레방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이하, 두레방)’의 박수미 소장을 방문면담한 결과이다.

293) 조선경제, 2012.06.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6/2012061600199.html

294) 소라미, ‘한국의 인신매매 관련법 규정의 실태’ 발표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법과 제도에 관

관련기관의 수사능력이 부족한 것 이외에 기소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어서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존재하는 한, 인신매매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법 규정들처럼 행위유형을 ‘매매’라고만 기술하고, 수단을 ‘폭행/협박(약취)’, ‘기만/유혹(유인)’ 정도로만 본다면, 상대방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의 인신매매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로 위의 E-6 비자사례의 경우를 보면, 수사기관은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서 유흥접객 및 성매매를 하는 줄 알고 입국한다는 한국 측 기획사와 외국인 전용업소 업주들의 주장에 경도되어 피해자의 피해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정을 종종 내린다고 한다.²⁹⁵⁾ 아래의 표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처벌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관련 형사사건 현황 리스트

(2009년 - 2012년 7월 현재)

고소인 (소송제기 날짜)	에이전시명, 클럽명 (피고소인)	사건 번호	검찰처분결과 및 최종판결, 현재상황	소송제기시 위반관련죄목 및 최종판결죄목
1. 甲*** (2009.10.13)	A기획사 (W**)	2009년 형제 15960호 (창원검찰청 통영지청) ~2011형제494 부산고등법원	검찰모두불기소, 재정신청판결 (2012. 2. 1)에 따른 피고인 종업원 K** 상소 제기 상황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강요죄로 고소, 피의자 3인 중 1인 K**에게만 성매매알선죄 판결
	B클럽 (Y** K**/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0고불항 821호(부산고등검찰청, 2011고단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		
2-1. 乙*** (2009.12.11) (2010.12.13)	C기획사 (C**, Y**)	2009년 형제 23574호 (평택지청)	불기소(혐의없음)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한 국제세미나(IOM 국제이주기구 주최), 2011.10.04, 2면.

295) 소라미, ‘한국의 인신매매 처벌 관련 법제의 실태 및 형사법적 대응방안’ 발표문, 인신매매 방지와 성산업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국회인권포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2012.11.9, 73면, 천진호,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3면 이하.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고소인 (소송제기 날짜)	에이전시명, 클럽명 (피고소인)	사건 번호	검찰처분결과 및 최종판결, 현재상황	소송제기시 위반관련죄목 및 최종판결죄목
	D**클럽 (J**/징역10월, 사회봉사80 시간 B**/징역6월, 2년간 집행 유예)	2010고단24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손해배상청구소송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진행, 해당 업소 관계자들만 처벌됨.	성매매 강요죄로 고소, 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위반 판결
3.丙*, 丁*** (2009.12.11)	(E* 클럽) K**, K**	2010형제40701호 (의정부지방법경찰청)	불기소 참고인중지	성매매알선등(성매 매강요등)
	(주)F** (J**)		불기소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2-2. 戊** (2009.12.11) (2010.6.14)	주)G*** (C**, Y**)	2009년 형제 23574호 (평택지원) 2010년 가소 714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판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2010가소7148호 창원지방법원) 진행 중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성매매알선등
	H**클럽 (Y**, K**)			
2-3.己* (2009.12.11)	(주)I*** (C** Y**)	2009년 형제 23574호 (평택지원)	불기소(혐의없음)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4. 庚* (2010.1.20)	(주)J*기획 (J**)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	내사중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5. 辛*** (2010.1.20) (2009.12.16)	(주)K*기획 (J**)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	내사중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L**** 클럽 (K**)	2010고단911(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기획사 고소 원치 않아 업주만 형사 고소함.	성매매강요, 알선죄로 고소, 성매매 알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
4-2. 壬** (2010.1.20)	M**클럽 (L**)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	내사중지	
6.癸** (2010.5.26)	N**** 클럽 (K**)	2010고단911(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5번 피해자와 동일 업소, 사건 병합되어 처벌	성매매강요, 알선죄로 고소, 성매매 알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
	(주)O**엔터테 인먼트 (H**, K**)	2010고불항 제11461호 (서울고등검찰청)	불기소, 항고 기각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7. a** (2010.6.4)	P** 클럽 (L**)	2010형제27321호 (의정부지방법경찰청)	불기소(재정신청까지 각하)	성매매강요
	주)Q***			성매매목적의

제4장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안) 검토

고소인 (소송제기 날짜)	에이전시명, 클럽명 (피고소인)	사건 번호	검찰처분결과 및 최종판결, 현재상황	소송제기시 위반관련죄목 및 최종판결죄목
	(Y**)			인신매매
8.b*** (2010.5.12)	(주)R** 엔터테인먼트 (H**, C**)	2010형제7462	불기소(증거불충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강요
	S**클럽 T**** 클럽 (L**, K**)			
9. c* (2010.10.14)	(주)T*기획 (L**)	2010형제 17511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불기소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U*** 클럽 (P**)		성매매 알선으로만 기소	성매매 강요로 고소, 출입국관리법위반 으로판결 후 검사가 항소하여 재판 진행중
10. d* (2010.10.14)	(주)V** 엔터테인먼트	2010형제 17512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불기소	성매매목적의인신 매매
	W*** 클럽 (P**)		피해자 9명과 동일업주, 병합되어 판결 대기중	성매매 강요로 고소, 출입국관리법위반 으로판결 후 검사가 항소하여 재판 진행중
11.c** (2010.12.13)	(주)X***** (J**)	2010형제 21420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불기소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Y**** 클럽 (K**)		5,6번 피해자와 동일 업소	성매매강요로 고소, 성매매알선으로 판결
	Z**클럽 (Y**)		불기소(증거불충분)	성매매강요
12.d** (2011.8.8)	(주)☆** 에이전시	2011형제 33208호 (의정부지방검찰청)	불기소 (현재 항고장 제출)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약취/유인죄, 성매매강요
	★*클럽			
	○**, ●** 클럽			
13. e*** (2011.10.6)	(주)◎**주식 회사 (J**)	2012초재1487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2012.4.17) 후 대기 중	약취,유인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강요, 알선죄
	◇*클럽 (성명불상)			
	◆***클럽			

고소인 (소송제기 날짜)	에이전시명, 클럽명 (피고소인)	사건 번호	검찰처분결과 및 최종판결, 현재상황	소송제기시 위반관련죄목 및 최종판결죄목
13-1. f*** (2011.10.6)	(W**)	2012초재1487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2012.4.17)	
	(주)□***** (L**)			
	■*** 클럽 (L**)			
	△****클럽(K**)			
14.g** (2012. 6. 13)	▲**** 클럽 (W**)	검찰청 접수 후 대기중		약취,유인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강요 등
	▽**** 클럽 (성명불상)			
	▼**클럽 (성명불상)			
	클럽매니저 (성명불상)			
15. h*, i* (태국 사건)	(주)숏** (J**)	고양지방법원 판결 (2012. 4. 20)	피해자들의 구조에 의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인지 수사 후 기소	성매매알선 (1,000만원) 성매매알선 (300만원) 성매매알선 (500만원) 불기소
	♣**마사지 (업주)			
	◆**마사지 (매니저)			
	K** (브로커)			
	성명불상 2인			

출처: 두레방(여성인권단체)²⁹⁶⁾

나.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2012년 미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뉴질랜드 해역에서 한국 원양어선이 강제노동, 무임금, 임금체불 혐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은 이러한 사건을 다루기 위한 현행법이 미흡하고,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률 등으로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유죄판결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유죄판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언급

296) <http://www.durebang.org/htm/main.php> 참조.

했다.²⁹⁷⁾ 실제로 현행법에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에 대한 규정²⁹⁸⁾ 이외에는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와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의 인신매매 의정서에 따르면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함께 가장 주된 인신매매의 목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법상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처벌할 만한 법률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한국의 원양어선이나 연근해 어선의 선원이주노동자 사건에서도 노동착취나 강제 노동 관련해서는 고소를 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과 폭행 부분만 해양경찰에 고소했으나, 이마저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⁹⁹⁾

제2절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규정

인신매매, 특히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³⁰⁰⁾

표 4-5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규정

법률	조항	내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통지, 보호에 필요한 조치의무
	제7조(신고의무 등)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의 신고의무/ 누구든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출판물, 방송매체에 방송해서는 안됨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시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동석가능/ 청소년,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

29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10면.

298)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99) 2012년 9월 3일 ‘어팔’의 어진이, 진유선 변호사가 ‘두레방’의 박수미 소장을 방문면담한 결과이다.

300) 아래의 규정들은 직접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와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 보호규정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법률	조항	내용
		악한 사람,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함
	제9조(심리의 비공개)	법원은 심리 비공개 가능/ 신고자등과 가족은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가능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성매매알선, 고용모집,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이고 양도하거나 인수한 경우에도 동일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명령), 51조(보호의집행)를 적용해서는 안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성매매피해자의 정의/ 지배·관리의 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조치 의무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일반 지원시설은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등/ 청소년 지원시설은 일반 지원시설의 업무 외에 교육제공 및 취학 연계/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은 귀국지원/ 자활지원센터는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취업 및 기술교육 등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규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 유형 중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제한되고 있다. 현행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불법원인채권무효조항(선불금)의 실효성

현실에서는 선불금 등을 매개로 하여 해당여성을 지배·관리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제3자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매매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마찬가지로,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선불금은 유흥업소 여중

업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유흥업소에서 일정기간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업주가 종업원에게 미리 지급하는 차용금을 말한다. 이러한 선불금은 이후 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인적 지배 수단으로 악용되어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³⁰¹⁾

성매매처벌법에서 불법원인채권무효조항이 시행된 이후, 선불금을 잠탈하는 업주들의 행태가 더 지능화되고 있다. 즉, 선불금을 대여금으로 공증을 받아 두는 경우, 업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자금을 대출의 형식으로 차용하는 경우와 같이 편법적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이 선불금인지 단순대여금인지를 입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³⁰²⁾

2. 외국인 여성피해자의 보호

현재 외국인여성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그 보호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현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에서는 입소자의 주·부식비 및 피복비는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지출되는데, 외국인은 현재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³⁰³⁾

다음으로,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외국인 여성은 성매매처벌법상의 특례조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의 집행이 유예되어 임시적으로 체류연장(기타비자 G-1)은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기간과 재판기간이 종료되면 외국인 여성은 더 이상 체류자격을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오랜 소송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유를 막론하고 소송이 끝남과 동시에 출국 조치된다. 이러한 규정 하에서는 실제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사실 신고를 기대하기가 어렵다.³⁰⁴⁾

301) 윤덕경/변화순·박선영,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5, 48면 이하.

302) 박찬길,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337면 이하.

303) 2012년 9월 3일 ‘어필’의 어진이, 진유선 변호사가 ‘두레방’의 박수미 소장을 방문면담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자들은 피해자의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인신 매매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스스로 사건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국으로 귀국하기도 한다. 이것 역시 인신 매매 피해자들이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더 나아가서 피해자는 소송을 지속하는 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극심한 생활고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지속할 것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³⁰⁵⁾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들의 사건과 소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주나 인신매매자에 의해 섭외되어 거짓을 증언하는 현 종사자들, 즉 동료 연예인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시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안전과 신원보호’인데, 현실적으로 한국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신원이나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³⁰⁶⁾

3.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아직까지 강제노동 등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나 실태에 대해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를 식별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으며,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피해자에 대하여 법으로 명시된 지원이나 보호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법적 구제절차 등에 관한 프로그램은 부재하다. 문제가 되었던 선원 근로자의 경우에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진정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관리회사, 수협, 해양항만청 등을 통한 문제제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³⁰⁷⁾

304) 2012년 9월 3일 ‘어팔’의 어진이, 진유선 변호사가 ‘두레방’의 박수미 소장을 방문면담한 결과이다.

305) 2012년 9월 3일 ‘어팔’의 어진이, 진유선 변호사가 ‘두레방’의 박수미 소장을 방문면담한 결과이다.

306) 2012년 9월 3일 ‘어팔’의 어진이, 진유선 변호사가 ‘두레방’의 박수미 소장을 방문면담한 결과이다.

307)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2012.6.29, 80면 이하.

제3절 인신매매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안

위에서 언급된 인신매매 처벌의 어려움들은 인신매매와 관련한 현행법들을 개정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가장 큰 문제는 인신매매 의정서에 따른 명확한 인신매매 개념규정이 없어서 성매매 처벌법상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에 한해서만 처벌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개념의 혼재를 야기하여 인신매매 범죄를 별개로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인신매매 범죄는 검거되어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수집되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따로 가려내어 보호하거나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³⁰⁸⁾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를 포괄하여 그 개념을 다루고 처벌할 수 있는 형벌조항이 형법에 내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무부는 2012년 8월, 유엔의 인신매매 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신매매 처벌과 관련한 현행법과 형법개정안의 신·구조문 비교는 다음과 같다.

표 4-6 인신매매 관련 형법개정 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308) 신혜수, “한국을 둘러싼 여성인신매매 현황과 대책 : 성매매 종사자를 중심으로” 토론회, 인신매매 방지와 성산업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국회인권포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2012.11.9., 110면.

현행	개정안
②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0조(예비, 음모)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3조(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고소)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삭 제〉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형법개정안은 인신매매 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첫째, 장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였다. 둘째, 동장에서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목적범 형태의 약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이외에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셋째, 결과적 가중범을 신설하고,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의 법정형을 구분하였다. 넷째,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죄에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동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법무부의 형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³⁰⁹⁾

1. 약취·유인·매매 구성요건의 한계

약취, 유인, 매매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앞서도 언급하였던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이다. 이 개념표지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존재하는 한 범죄성립을 배척하게 하며, 심각한 정도의 물리력 행사만을 그 요건으로 하게 한다. 실제로 위 구성요건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형법 개정안에 동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신매매자와 인신매매 피해자 간의 다양한 지배적 관계를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표지가 필요하다.

309) 소라미, 앞의 발표문, 76면 이하.

2. 수단행위의 다양성 부족

동 개정안에 따르면, 인신매매로 포섭될 수 있는 수단행위는 “폭행 혹은 협박”(약취), “기망 혹은 유혹”(유인) 정도이다. 하지만, 앞서의 인신매매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의 인신매매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육체적 폭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사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기타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개인을 모집, 이동, 은닉, 또는 인계받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 규정은 인신매매의 수단을 다양하게 포섭하고 있다. 형법개정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행위수단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피해자 동의와 인신매매범죄 성립의 무관성

인신매매는 피해자 동의가 존재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대부분 인신매매 범죄는 피해자의 상당히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가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의사표시는 진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신매매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인신매매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항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에 명시적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인신매매 의정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인신매매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³¹⁰⁾

310) 피해자 동의와 인신매매 성립의 무관성 명시는 인신매매 범죄를 성매매 범죄와 혼동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규정이 아닐까 한다. 성매매 제공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매매 행위의 범죄화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성매매를 제공한 여성의 자발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와 성매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구조에서 진정한 자발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유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신매매는 성매매와 다른 범죄이다. 따라서 인신매매 처벌규정의 도입을 통해 인신매매범죄와 성범죄는 다른 처벌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동의와 인신매매 성립여부는 무관하다는 점을 법 규정을 통해 명시해야 할 것이다.

4. 미성년자·장애인 피해에 대한 구성요건 완화의 필요성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를 종전처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과 형법 개정안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별도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도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행위가 범죄로 성립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적인 목적은 있지만, 강제적인 물리적 행사 없이 사람을 인수인계하는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의 인신매매 의정서 제3조 c)에서는 아동의 경우,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은닉 등의 행위는 “의정서에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신매매 범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에도 미성년자의 인수인계 행위는 불법적인 목적이 있지만 하면, 특정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신매매 범죄가 성립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착취 목적으로 장애인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행위도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하여야 한다.³¹¹⁾

제4절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이처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안은 유엔의 인신매매 의정서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특히, 개정안은 인신매매 의정서와 같은 구체적인 정의와 요건들을 담고 있지 않아 인신 매매자들을 처벌하는데

311) 이와 같은 문제점들, 즉 약취·유인·매매 구성요건의 한계, 수단행위의 다양성 부족,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인신매매 성립 명시 필요성, 미성년자·장애인 보호에 대한 구성요건의 명확화 필요성들을 단순히 형법해석의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의견도 있다 (박지영, “인신매매 사범 처벌강화를 위한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문, 인신매매 방지와 성산업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 (국회인권포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2012.11.9., 118면). 이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은 개정안에 제시된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지, 개정안 자체의 문제일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전의 형법규정만으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인신매매 범죄들을 포섭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우리 형법도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내용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청에 기초하여 제안되었다. 법안의 문제를 법안 ‘해석’의 문제라고 보아 사안을 단순화시키면, 인신매매 범죄를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현행 형법의 문제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인신매매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와 수사와 재판에 대한 조력이 필수적이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피해를 말하지 않는 한, 인신매매 범죄는 처벌되기가 어렵다. 하지만, 현재 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는 피해신고를 한 이후에 더욱 더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³¹²⁾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형법개정을 넘어서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기존의 특별법으로 인신매매를 규율하는 것이다. 성급한 특별법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신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기존의 특별법들은 인신매매 처벌규정들로서 실효성이 극히 적은 상황이다. 기존의 특별법들로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인신매매를 포섭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여러 요건과 수단들을 우리 상황에 맞게 구체화시켜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³¹³⁾ 현재까지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발의된 특별 법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법안이 있다.

1.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두 법률안은 양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2010년 7월에 발의되었다.³¹⁴⁾ 현재 성매매방지 관련 법률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인신매매와 관

312) 현재의 성매매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인신매매피해자는 수사와 재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는 인신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위·변조, 불법입국 등에 대해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형법과 출입국관리법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신매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입은 피해를 말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소라미, 앞의 발표문, 74면

313) 정미례, “전자국적 성착취에 대항하는 인신매매 관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발제문,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김춘진 주최), 2010.5.4., 30면 참조

314) 동 법률안은 김춘진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안이다.

련한 동 법률안들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처벌 법률로 이원화하여 제안되었다. 동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동 법률안은 인신매매 행위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이 법안에서 말하는 “인신매매”란 성착취, 강제노동, 노예상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보호자 또는 감독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여 대상자를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안 제2조 제1호). 덧붙여서, “아동 등 인신매매”란 성착취, 강제노동, 노예상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안 제2조 제1호).

동 법률안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가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판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인신매매 관련 범죄행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안 제3조). 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인신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안 제11조 제1항).

동 법률안에 따르면 인신매매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안 제18조).

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동 법률안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보장,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이 법안에서 말하는 “인신매매”란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의미한다(안 제2조 제1호).

동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보장,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인신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안 제3조).

다. 수정된 법률안의 내용

양 법률안은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는데,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2012년 12월 제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다시 발의된 법률안은 이전의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의 검토보고를 일부 받아들여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발의된 법률안은 이전의 법률안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7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신·구 법률안 비교

18대안	19대안	비고
제2조 (정의) 1. “인신매매”란 성착취, 강제결혼, 강제노동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상대방의 공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보호자 또는 감독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여 대상자를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제2조 (정의) 1. “인신매매”란 성착취, 강제결혼, 강제노동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상대방의 공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보호자 또는 감독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하여 대상자를 약취, 유인, 이동,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및 이에 동조, 가담하는 행위	인신매매의 행위 유형에 약취, 유인, 이동, 은닉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에 동조, 가담하는 행위가 추가하여 처벌범위 확대

제4장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안) 검토

18대안	19대안	비고
〈추가〉	제18조 제2항 (벌칙) 아동 등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19대 안에서 위와 같은 벌칙규정이 추가됨

출처: 공익법 센터 ‘어필’ 홈페이지 (<http://www.apil.or.kr/>)

표 4-8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신·구 법률안 비교

18대안	19대안	비고
〈추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대 안에서 추가
법 제8조 제4항 지원시설의 장은 인신매매피해자 등이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4항 지원시설의 장은 인신매매피해자 등이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대 안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19대 안에서는 문구가 약간 수정됨
법 제9조 제3항 (상담소의 설치) 상담소에서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법 제10조 제3항 (상담소의 설치) 상담소는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18대 안에서는 상담소 안에 상담실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대안에서는 따로 상담실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부분은 삭제됨
법 제11조 제2항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경우 의료보험 비가입 등 외국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2조 제2항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경우 외국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역, 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9대 안에서는 지원시설의 지원에 대한 예시에 의료 이외에 통역을 추가
법 제13조 제1항 (교육)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 19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 제 14조 제1항 (교육)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제 10조에 따른 상담소 종사자 및 제 20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신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도록 규정 기존의 지도·감독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지원시설 종사자, 상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6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19대 안에서 지원시설 등의 폐쇄사유가 구체화

2.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동 법률안은 2011년 3월에 발의되었다.³¹⁵⁾ 현재 인신매매와 관련한 법률들이 처벌과 피해자 보호 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근거로 담당 부처의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신매매 처벌 관련내용

동 법률안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인신매매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동 법률안에서 “인신매매”는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강제구걸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모집·알선·운반·은닉·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 또는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19세 미만의 아동,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를 모집·알선·운반·은닉·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로 정의한다(안 제2조).

동 법률안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를 한 자의 범죄행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의 정도, 수사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하여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관여한 허위문서작성,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행위에 대하여 인신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안 3조).

동 법률안에 따르면,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국외로의 이송 또는 국내로의 이송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안 12조).

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 관련내용

동 법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

315) 동 법률안은 이정희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안이다.

하여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인신매매 범죄의 방지 및 처벌,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보장,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안 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인신매매피해자 종합지원센터 등 지원 단체에 연계하여 수사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 2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 피해자의 생계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25조). 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 피해의 상담, 치료, 보호,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신매매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안 26조).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는 의료비·생계비 지원 등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있어서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가 내국인과 차별 없이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안 28조).

3. 인신매매 의정서와의 비교

지금까지의 인신매매 관련 법률안들은 유엔의 인신매매 의정서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발의된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내용과 비교하여 위의 법률안들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³¹⁶⁾

표 4-9 인신매매 처벌 관련내용 비교

	인신매매 의정서	법률안 1	법률안 2
인 신 매 매 정 의	1) 성매매, 기타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 및 노예와 유사한 관행, 노역,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2)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기타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3) 개인을 모집,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 받는 행위	1) 성착취, 강제결혼, 강제노동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2) 폭행, 협박,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상대방의 공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보호자 또는 감독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여 3) 대상자를 착취, 유인, 이동,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및 이에 동조·가담하는 행위	1)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강제구결 등 착취를 목적으로 2)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공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3) 대상자를 모집, 알선, 운반, 은닉,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
아 동 등 인 신 매 매	1) 착취를 목적으로 2) <u>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u> 3) 아동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또는 인수행위는 인신매매로 간주됨 *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1) 성착취, 강제노동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2)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여 3) 대상자를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아동,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자 또는 감독자를 말함.	1)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강제구결 등 착취를 목적으로 2) (언급 없음) 3) 대상자를 모집, 알선, 운반, 은닉,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 * 대상자는 19세 미만의 아동,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피 해 자 의 동 의	인신매매 정의 규정에 언급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착취 목적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무의미함.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판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인신매매 관련 범죄행위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를 한 자의 범죄행위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인신매매 피해의 정도, 수사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하여 <u>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행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u>
처 벌	인신매매 범죄행위의 1) 미수, 2)공범, 3)범죄를 조직하거나 타인에게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1) 인신매매 행위의 미수범 2) 인신매매 등을 광고한 자,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자, 광고물을 배포한 자 3)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함.	1) 인신매매 목적으로 광고를 한 자 2) 인신매매 행위나 인신매매 광고를 한 자의 미수범 3) 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함.

316) 두 개의 김춘진 안은 ‘법률안 1’로, 한 개의 이정희 안은 ‘법률안 2’로 명명한다.

가. 인신매매 정의규정

인신매매 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은 행위, 수단, 목적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신매매 의정서가 최소기준의 개념표지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국가는 국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취유형을 포함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를 범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률안 1은 강제결혼의 형태를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다만, ‘강제’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폭행, 협박, 위력 혹은 이에 준하는 수단을 전제로 하는 용어임을 고려할 때, 다른 예시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³¹⁷⁾ 더 나아가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인신매매를 포섭할 수 있는 개념표지들의 명확한 정의가 법에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양 법안은 ‘성착취, 강제결혼, 강제노동, 장기적출, 인신매매피해자, 위계,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 이용’ 등의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다는 정의규정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것은 여러 유형을 포괄하는 ‘착취’ 목적과 연관되어 인신매매의 수단을 설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나. 아동 등 인신매매

인신매매 의정서는 아동 인신매매의 경우에는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한, 일반적인 인신매매 개념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 수단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이를 법률안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외에 양 법률안은 인신매매 의정서에 없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를 아동 등의 인신매매 규정에 의해 보호하고자 한다.

317) 이한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2011.11, 22면.

다. 피해자의 동의

인신매매 의정서에 따르면 이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신매매 개념을 충족시키는 한,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범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양 법률안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발의되었다. 더 나아가서, 법률안²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행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신매매자를 실효성 있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³¹⁸⁾

라. 인신매매 처벌

인신매매 의정서는 범죄행위의 1)미수, 2)공범, 3)범죄를 조직하거나 타인에게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 법률안은 인신매매를 광고한 자,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인신매매 행위의 ‘공범’과 ‘인신매매 행위를 저지르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표 4-10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관련내용 비교

	인신매매 의정서	법률안 1	법률안 2
인신매매 지원 및 피해 보호 에 대 한	1)국내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원을 보호해야 함. 특히, 인신매매 관련 법절차를 비공개로 함. 2)국내법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관련 재판절차 및 행정절차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견해를 심의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함.	1)인신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서 제13조를 준용함. 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2)재판과 수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을 신문·조사할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	1)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2)재판과 수사과정에서 인신매매피해자를 신문·조사할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

318) 유럽평의회 협약 제26조도 인신매매 피해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동 규정은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인다.

제4장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안) 검토

	인신매매 의정서	법률안 1	법률안 2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대한	3)각 당사국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주거지, 인신매매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한 상담 및 정보, 의료·심리적·물질적 지원, 고용·교육·훈련기회 등을 제공해야 함.	3-1)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는 필요한 통역을 지원함. 3-2)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3-1)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는 의료비·생계비 지원에서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가 차별 없이 지원 및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함. 3-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해야 함. 3-3)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인신매매 피해자의 지위	인신매매 피해자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자국의 영역 내에 체류하도록 허가하는 입법이나 기타 조치를 채택해야 함.	1)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는 사건의 불기소처분, 공소 제기 이후에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기간 동안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2)해외에서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 등이 발견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외 공관장에게 피해자의 귀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1)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는 수사 또는 재판종료 시까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장받을 수 있음. 2)수사 및 재판종료 후에도 인신매매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장받을 수 있음.
인신매매의 방지	1)당사국은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 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여성과 아동보호에 대한 정책 및 관련조치를 확립해야 함. 2)당사국은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를 위해 연구, 홍보 및 캠페인, 사회·경제적 사업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1-1)인신매매방지에 관한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둠. 1-2)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 1-3) 인신매매방지에 관한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원스탑서비스 조직을 신설할 수 있음. 2-1)법무부장관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2)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인신매매방지 및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함.	1-1)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둠. 1-2)법무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인신매매방지 및 처벌,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1-3)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원스탑서비스 조직을 신설할 수 있음.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하여 조사·연구·교육·홍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상호협력	당사국들은 법집행, 출입국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에 자국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여 상호 협력해야 함.	국가는 인신매매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 공조의 강화에 노력해야 함.	국가는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마.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인신매매 의정서는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당사국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주거지, 인신매매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한 상담 및 정보, 의료·심리적·물질적 지원, 고용·교육·훈련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 법률안 모두 법원심리의 비공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의 필요성만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원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 인신매매 피해자의 지위

인신매매 의정서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국 내에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양 법률안은 모두 수사 또는 재판종료 시까지 인신매매 피해자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기간 동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2년 미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가 34개, 조건 없이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가 43개, 그리고 형사사법 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가 20개에 달한다. 한국은 이 중에 마지막 유형의 국가에 속한다.³¹⁹⁾ 실제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영구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피해자들이 사건을 신고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³²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

319) The Protection Project Review of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he Protection Project, Johns Hopkins University, 2012, 55면.

320) Legislative Guid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Protocols There to, UNODC, Sales No.E.05.V.2, part2 chap2, 291면.

신매매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조건 없이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혹은 영구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 인신매매 방지

인신매매 의정서는 각 국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과 관련조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양 법률안은 인신매매방지에 관한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신매매방지정책 조정협의회를 두고자 한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흥미로운 점은 국내외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부처가 양 법률안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법률안 1은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각각 나누어 두 개의 법률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인신매매 처벌은 법무부 소관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 2는 양 자를 묶어 하나의 법률안을 발의하여 처벌과 피해자 보호 모두 법무부 하나의 담당부처 소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똑같은 조사라도 그 담당부처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인신매매 관련 특별법의 입법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다시 한 번 재고를 요한다.

아. 상호협력

인신매매 의정서의 상호협력이란 법집행, 출입국과 관련하여 국가 간의 협력 시스템 공조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안 2는 1) 인신매매 사범의 수사 및 검거와 관련한 국제협력, 2) 인신매매에 관련된 사법제도, 수사기법,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교육, 훈련 및 교류, 3)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국적, 거주 확인 요청을 다른 나라로부터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확인 및 회신, 4)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출신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행에 필요한 적법한 서류가 없는 피해자를 위해 여행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5) 타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을 경우, 그 정보의 사용에 제한을 요청한다면 그 요청의 수용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법제를 위한 기초제안

최 민 영

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법제를 위한 기초제안

지금까지 동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신매매의 유형을 살펴보고, 위 인신매매를 대처할 수 있는 현행법의 범위와 한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인신매매 의정서와 해외의 입법례 등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며 연구하였고, 그 동안 입법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제적인 노력들을 정리하였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에서는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법제를 위한 기초적인 제안을 하려고 한다.³²¹⁾

제1절 입법형식

정부는 2000년 12월 13일 서명한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대한 이행 입법 차원에서 형법개정안을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국회에 제안을 하였다. 인신매매를 범죄화 하고 형벌화 하는 것을 형사법의 기본법인 형법개정의 형식을 통해

321) 여기서 인신매매 방지는 ‘처벌과 예방’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서 입법화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처 의지를 표명하여 보다 강력한 일반 예방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신매매에 관한 법이 담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최소한 인신매매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인신매매 정의이다. 그런데 인신매매 의정서 상 인신매매 정의는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본법인 형법의 특성과 구조상 인신매매의 정의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동시에 추상적인 표지 하나 하나를 구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신매매를 대처하기 위한 법은 특별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다시 인신매매에 관한 법은 인신매매 의정서가 규정한 3개 혹은 4개의 큰 줄기를 담아야 한다. 즉 인신매매자의 처벌과 인신매매의 예방과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그리고 인신매매를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그것이다. 특별법의 형식으로 인신매매에 관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하나의 법으로 위 3 혹은 3개의 줄기를 모두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나누어서 별개의 특별법으로 제정을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하나의 특별법에 모두 담을 경우 통일성을 가지고 인신매매에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인신매매자 처벌과 인신매매 예방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함께 담당할 정부 부처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인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모든 것을 통할할 별도의 부처 간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부처 간의 협조가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한 부처가 처벌, 예방, 피해자 보호의 모든 측면을 담당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법률의 경우처럼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과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두어각각의 담당 부처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것이다.

제2절 인신매매 개념과 인신매매자 처벌

1. 인신매매 개념

가. 포괄적인 인신매매 정의규정의 필요성

어떤 행위가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인신매매에는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경우 처벌이 되지 않는 이유는 동 의정서 수준의 포괄적인 인신매매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인신매매 의정서에서는 어떤 사람의 1)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인 이유 등에서 기인하는 취약성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2) 성착취, 노동 착취 등의 목적으로 3) 그 사람을 이동시키거나 이동에 관여한 행위를 인신매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인신매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1) 행위의 목적에 해당되는 착취의 유형에 관해 열거적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을 하되, 예시되는 착취의 유형에는 한국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3가지 유형의 착취인, 성착취(성매매, 추행, 간음, 포르노그래피 제작 등)와 노동착취(강제노동, 구걸 등)와 기타착취(장기적출, 아이 재생산, 불법입양 등)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수단과 관련해서도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거적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예시되는 수단의 유형에는 폭행과 협박과 위계나 위력뿐 아니라 최소한 동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수단 - 상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기타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 - 이 포함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3) 행위와 관련해서는 인신매매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사람을 직접 이동시키는 것뿐 아니라 이동에 관여하는 행위자가 모두 정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 알선, 운반, 은닉, 인수인계 행위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나. 명확성 원칙에 대한 고려

인신매매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아울러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의한다고 하면

서 추상적으로 규정되도록 한다면 사법부에 의해서 협소하게 해석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인 규정으로 판단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신매매자의 처벌로 활용할 수 있는 형법 제288조 제2항의 부녀매매죄의 부녀매매의 개념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녀매매란 거래 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처럼 대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본죄의 성립여부는 매도인이 매매 당시 부녀자를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협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협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제인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402 판결)”라고 아주 문리적으로 좁게 매매를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사용한 여러 개념들 - 예를 들어 착취, 취약성을 이용, 강제노동, 장기적출, 구결 등 - 을 명확히 하는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

다. 아동과 장애인의 특수성 반영

인신매매 의정서와 인신매매에 관한 미국 연방법 등의 예를 좇아 아동과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착취 목적으로 그 사람을 이동하거나 이동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수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라도 인신매매에 해당하도록 해야 한다.

2. 인신매매자 처벌

인신매매자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현대판 노예제라고 하는 인신매매의 심각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에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미수와 공범을 처벌하는 것 이외에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

어야 하며,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이나, 인신매매에 관한 필리핀의 입법례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알고서 그 사람으로부터 성을 사는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착취하는데 관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인신매매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에서처럼 인신매매에 연루된 기업이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신매매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인신매매에 연루된 기업들을 공개하는 규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3절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

인신매매 피해자는 그 취약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인신매매자의 처벌의 관점에서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는 중요하다. 아무리 인신매매를 처벌하려고 해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가 안심하고 인신매매 피해 사실에 대해 당국에 고소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에 협조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 피해자의 법률위반에 대해 비범죄화 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체류를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1. 비범죄화

인신매매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착취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성매매를 하거나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체류기간을 도과 하는 등으로 형사 및 행정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에서는 위 행위들을 비범죄화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2. 신변보호와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조력

인신매매 피해자는 수사를 받거나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자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위협 받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예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며 인신매매 피고인과의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외국인인데다가 착취의 피해자로서의 취약성으로 인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증거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통역을 제공하거나 신뢰 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3. 체류보장

인신매매에 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보호소에 구금되거나 강제퇴거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며, 체류하는 기간 동안 취업을 허가하거나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나 호주의 입법례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에는 영주비자에 준하는 체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호해야 한다.

4. 주거·의료 등의 지원

인신매매 의정서에 따라 주거를 지원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상담과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되, 특히 정신적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정신과 치료 내지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외국으로 인신매매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해외 공관을 통해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절 인신매매 예방과 국제협력

1) 인신매매 예방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출입국관련 공무원, 수사기관, 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의 교육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인신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할 때 그들의 체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체류가 형식적으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해자로서의 취약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은 법집행 공무원에게만 행해져서는 안 되고, 일반 대중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전향적인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법과 국민 일반의 의식과 간극이 클 경우에는 법 집행기관이 인신매매와 관련한 법의 제정 정신에 따라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3) 현재까지 인신매매의 유형별, 피해자별 통계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통계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 예방과 관련해서는 법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럽평의회 협약에서처럼 인신매매에 관한 국가조사 보고관 등 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서로 펴내도록 하여야 하며, 부처 간 협의체를 두어서 위 보고서에 기초해서 인신매매의 예방에 관한 정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을 둘 뿐 아니라, 형법개정안과 같이 해외에서 외국인에 대해 범한 인신매매자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관할권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유경,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73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11.
- 김은경,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7.
- 박수미,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E-6비자의 개선방안, 두레방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여성 지원시설, 여성과 인권 제4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0.
- 박지영, ‘인신매매 사범 처벌강화를 위한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문, 인신매매 방지와 성산업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 2012.
- 박찬걸,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1.
- 소라미, ‘한국의 인신매매 관련법 규정의 실태’ 발제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법과 제도에 관한 국제세미나, 2011.
- 소라미, ‘한국의 인신매매 처벌 관련 법제의 실태 및 형사법적 대응방안’ 발표문, 인신매매 방지와 성산업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 2012.
- 신혜수, ‘한국을 둘러싼 여성인신매매 현황과 대책 : 성매매 종사자를 중심으로’ 토론문, 인신매매 방지와 성산업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 2012.
- 심재무, 약취·유인죄의 정비방안, 형사법 연구 제22호 특집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
- 우정희, 2011 성매매 업소 집결지, 현장에서 말하다, 여성과 인권 제5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 윤덕경/변화순/박선영,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5.
- 이정원, 형법각론, 신론사, 2012.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2.
- 장준오/이윤미/한종만/김종훈/배규성/김봉석, 국제인신매매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한국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정경숙, 집결지 자활사업의 성과와 제언, 여성과 인권 제5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 정미례,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관점과 논의, 여성과 인권 제5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 정미례, ‘전지구적 성착취에 대항하는 인신매매 관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발제문,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0.
-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삼영사, 2011.
- 천진호,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 외국문헌

- Australian Red Cross, Australian Red Cross Submission to 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Inquiry into the Exploitation of Women through Trafficking, 2012.
- Chuang, Janie, The United States as Global Sheriff: Using Unilateral Sanctions to Combat Human Trafficking, 27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6.
- Cummings, Kristina, The Trafficking In Victims Protection Act; A Feasibility Assessment, Journal of Race, Gender, and Ethnicity Vol. 2, Touro College Jacob D. Fuchsberg Law Center, 2008.
- Hyland, Kelly E., The Impact of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Human Rights Brief 8 No.2, 2001.
- Mattar, Mohamed Y., International Conventional Law: The United Nations Protocol to

-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peech delivered on October 25, 2002 at the Globalization, Justice and the Trafficking of Woman and Children Conferenc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USA.
- _____, Interpreting Judicial Interpretations of the Criminal Statutes of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en Years Later, 19 American University Journal of Gender, Social Policy and the Law 2011.
- McNicol, Jim / Schloenhardt, Andreas, Australia's Child Sex Tourism Offences,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TC Beirne School of Law Human Trafficking Working Group, 2011.
- Morcom, Corin / Schloenhardt, Andreas, The Evolu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Queensland, 2011.
- Raymond, Janice G., The New UN Trafficking Protocol,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No.5, 2002.
- Schloenhardt, Andreas / Jolly, Jarrod, Trafficking in Persons: A Critical Appraisal of Criminal Offences in Australia,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TC Beirne School of Law Human Trafficking Working Group, 2011.
- Simmons, Frances, Strengthening Australia's Response to Human Trafficking, Report to the Australian Women's Coalition, Anti-Slavery Project,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2010.
- UNODC, Combating Trafficking in Person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o. 16, 2009.
- UNODC,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009.
-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0.
-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1.
-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2.
- Wyler, Liana Sun, Trafficking in Persons: International Dimensions and Foreign Policy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

3. 기타

강성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문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례,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 보고, 2012.11.16, 보건복지부.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방지교육 지침서, 피해자 식별 및 인터뷰 기술, 2011.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자여성 지원시설, 2012년 8월 방문면담.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시함께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공동집필, 2010.

오양 75호의 끝나지 않은 악몽, 공익법 센터 어필 보고서, 201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과 실태, 여성과 인권 제3호,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두레방 등 3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편집, 2010.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2012.

최황규,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문제, 서울중국인교회 사례,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탁틴내일, ‘한국 남성 필리핀 성매매 관광 실태조사’ 관련 2012년 8월 방문면담.

한국-필리핀 간 성산업 이주(E-6-2사증관련) 송출실태 보고서,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요타재단 협력프로젝트.

G, Pendleton, Human Trafficking and the T-visa, Training material supported by the Violence Against Women Off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U.S. Department of Justice.

J. Jeong Trenka, 입양체제에서의 인권침해: 무엇이 문제인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9.

Marcelina Orque, Director of Peace and Development Center, 공익법센터 어필 주최 ‘필리핀의 인신매매상황’에 대한 세미나(2012.09.07.).

- Maria Stella O. Echano, Country Coordinator of 'terre des homes' (Netherlands),
2012년 7월 필리핀 방문면담.
- N. Vilches, Traffcking of Women and Children, Expert Law (submitted January,
2004). [http://www.expertlaw.com/library/domestic_violence/Philippines
_trafficking.html](http://www.expertlaw.com/library/domestic_violence/Philippines_trafficking.html)
- PACT(Philippines Against Child Trafficking), 2012년 7월 필리핀 방문면담.
- U.S. Department of Labor's List of Goods Produced by Child Labor or Forced
Labor 2012. <http://www.dol.gov/ilab/programs/ocft/2012TVPRA.pdf>

Abstract

Research on Legislation for Trafficking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Eoh, Jinny* · Choi, Min-Young**

‘The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Hereby after, the Protocol of Trafficking), which is currently used in international community, defines trafficking centered around purposes, means and acts as follows. “Trafficking in persons shall mean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u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This definition provides types of exploitation in minimum standard, and thus each state has to

* Lawyer,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devise legislation in more detail including trafficking of various form which can be found in the country. Numerous forms of trafficking crimes are also found in Korea, and this report briefly provides six types of trafficking. First, migrated female that entered into sex industry while holding E-6 visa. Second, migrated laborers that are suffered from forced labor. Third, female marriage immigrants who are exposed to forced labor and sexual exploitation. Forth, Korean female that are brought into compulsory prostitution due to debt. Fifth, children and women trafficked for the purpose of sex tour. Sixth, children who are exploited because of vulnerable adoption system.

For legal examination regarding trafficking, this report attempts to review legislation of the Philippines, the U.S. and Australia where the legislative system concerning trafficking is well established. Although all these countries are having a difficult time implementing the related law, there have been established measures to punish trafficking and protect victims. There three countries have slightly different definition of acts, measures and purposes of trafficking crime in legislation. However when it comes to b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these countries reflect the Protocol of Trafficking. Next, in the case of sex tour, legal liability is expanded to a crime related to trafficking, all the people who are implicated in the sex tour are punished. In other words, if a person had utilized, instigated, or planned the service, then one would be punished despite not being a human trafficker. Lastly, these three countries protect victims through decriminalization, and the U.S. and Australia, which are terminal nation of trafficking victims, take active measures in protecting victims through letting victims apply for permanent residents regarding immigrant status.

Out of the current legislation in Korea, the representative provisions related to trafficking punishment and protection of victims are kidnap and invit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the provisions on punishment of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for victims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provisions according to the Act on Punishment of Prostitution Brockage and etc. However, in reality, these provisions are limited in effectiveness of trafficking punishment and protection of victims respectively. Considering this matter, the Ministry of Justice pre-announced legislation of revised bill of the Criminal Law that newly establishes provisions of trafficking punishment in Particulars of the Criminal Law in August 2012. Bills on the Special Law on Trafficking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were motioned respectively in July 2010, March 2011, and July 2012. This report would like to review main contents of these revised bill of the Criminal Law and bills on the Special Law on Trafficking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and would discuss defects whilst comparing these bills to articles of the Protocol of Trafficking. Based on this, this report would make a suggestion for the legislation of prevention of trafficking and victim protection, in terms of legislation form, definition of trafficking and punishment,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n finish the discussion.

연구총서 12-AB-06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발 행 / 2012년 11월

발행인 / 김일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2 / 5283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 쇄 /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7,000원

ISBN 978-89-7366-987-5 93360